

결격사유 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이 준 우



연구보고 2012-04

결격사유 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이 준 우



결격사유 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How to Amend Laws on the Disqualification

연구자 : 이준우(선임연구위원)
Lee, Jun-Woo

2012. 10. 31.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현행법령에는 각종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약 400여개 있다. 법제처가 2006년 이래 법령입안심사기준에서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의 모델을 제시하여 왔으나, 아직도 많은 규정들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법령입안심사기준이나 기존의 관련 연구는 결격사유의 규정방식 및 유형화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결격사유에 관한 법령의 체계나 관련 법률관계의 성격 등에 따라 동일하게 규정하여야 할 경우와 특별한 결격사유를 두어야 할 경우 등에 관한 법리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 결격사유는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형평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과잉규제 금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결격사유에 관한 법령에서 이러한 헌법상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전반적인 조사와 검토가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법령입안심사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격사유 관련 규정의 입안방식과 현행 관련 규정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지 그 현황

을 파악하고 새로운 유형의 결격사유 규정을 조사, 분석하여 향후 법령정비에 활용하고자 함.

- 결격사유에 관한 법리를 정립함으로써 각 법률관계에 관한 결격사유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체계화를 도모함.
-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등의 관점에서 결격사유규정이 합리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여 국민의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입법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II. 주요 내용

□ 결격사유의 관련 법령 체계 분석

- 결격사유 근원규정과 확장 적용규정
 - 결격사유의 출발점이 되는 형법 제43조 및 제44조 규정을 제한되는 권리 및 자격을 기준으로 하여, 관련 법률관계를 체계화하고,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 등으로 정리
- 결격사유의 구체적 사유 유형화
 - 결격사유의 법리적 근거로서 연원되는 법률을 기준으로 재분류
 - 민사법적 결격사유, 형사법적 결격사유, 행정처분에 근거한 결격사유 등으로 유형화하여 그 합리성과 형평성을 분석

□ 법령체계별 결격사유 유형 분석

○ 공통 결격사유별 분석

-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원용하고 있는 법령을 분석하고,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 등의 관계에서 결격사유의 차이를 분석, 그 합리성을 검토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원용하고 있는 법령을 분석하고, 공공기관의 설립법률에서 따로 구체적인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그 형평성과 합리성을 검토함.
- 별치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에 관한 결격사유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와 비교 검토

□ 결격사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 기본권 제한의 원칙, 결격사유 관련 위헌심판의 주요 쟁점 분석

- 직업의 자유와 그 제한기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심판례의 관련 쟁점 분석

○ 결격사유 중 기본권 침해여부

- 결격사유 중에서 기본권 특히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법리나 근거 등을 헌법재판소 심판례 분석을 통하여 정리

□ 결격사유 관련 법제 개선방안

○ 체계에 따른 개선 방향

- 결격사유 대상 자격을 기준으로 5가지 분야의 자격을 각각 유형화하여 그 구체적인 결격사유를 정비
- 형법 제43조제1항 각호의 자격별로 체계화하고,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기본적 규정으로 삼아 정리방안을 마련함.
-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은 다시 전문자격, 영업의 인허가,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등으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마련함.

○ 개별 결격사유별 개선방안

- 공무원 결격사유 정비방안, 공법상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결격사유 정비방안, 결격사유와 소멸·종료사유의 구별 정비, 민법 개정 및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과 결격사유 정비방안, 개별 결격사유별 법제 정비방안, 규정형식의 표준화 및 결격사유간의 형평 제고

Ⅲ. 기대 효과

-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른 법령정비대상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향후 법령 개정시 반영하는 데에 기여

- 결격사유 규정 및 법령의 체계화를 통하여 향후 결격사유 관련 입법시 합리성을 도모
- 개별 결격사유간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규제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도모, 기본권 보장에 기여

▶ 주제어 : 결격사유, 법령체계, 원용 법률, 공공기관, 자격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

Research background

-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of South Korea have approximately 400 sets of rules related to various disqualifications. Despite the fact that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has suggested some models on disqualifications in its guideline on legislation review, many regulations are still in un-organized formats and contents without any special reason, thus, raising the necessity to investigate the status quo and organize them more systematically.
- The guideline on legislation review or other related researches have focused on the way of defining and standardizing disqualification causes. In this situation, there remains the need to build new legal logics in diverse cases such as allowing or not allowing some special disqualification causes depending upon a relevant law's own system or the characteristics of legal relations.
- Disqualifications are to limit constitutional freedom to choose a job, right to hold a public office, etc. Therefore, they should be controlled well under the boundary of the principles of equality, proportionality and anti-overrestriction. In this sense, overall investigation and review are necessary to see if such constitutional rights are fully honored in disqualification laws as well.

Research purpose

-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how much the method of drafting disqualification-related legislations under the guideline on legislation review coincides with the current related regulations. This thesis also tried to investigate new types of disqualification regulations for future legislative re-organization.
- By establishing a proper legal principle for disqualifications, the researchers hope to contribute to more equal, reasonable and well-organized disqualification management between each different set of laws and regulations.
- This is part of efforts to examine the rationality of disqualification regulations in consideration of the legitimacy of legislative purpose, appropriateness thereof, minimum negative impacts therefrom, etc. so that people's freedom of choosing a job, right to hold a public office and other basic rights are protected by legislative improvement in the first place.

II. Outline

Analysis of legal system on disqualification

- Original regulation for disqualification and its further application
 - Re-align Articles 43 and 44 of the Criminal Act, the original legal ground for disqualification, and the legal relations there of according to involved rights and qualifications. Separate general rules and special rules, etc.

○ Specification of disqualification causes

- Re-classify disqualification caused based on applicable basic laws and regulations
- Group such causes according to civil, criminal and administrative characteristics and check their rationality and equality.

□ Analysis of disqualification types according to legal system

○ Analysis of common disqualification causes

- Analyze laws and regulations using Article 33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as their basis and identify the difference in disqualifications between general public officials and special public officials. Check its rationality.
- Analyze laws and regulations using Article 34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as their basis, compare some more specific disqualification causes the Act acknowledged with other cases in other laws, and check their equality and rationality.
- Compare disqualifications prescribed in Article 33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with disqualifications on executives of public agencies, etc. treated as a public official when being punished.

□ Disqualification & freedom to choose a job, etc.


○ Analysis of key issues on the principle of limited basic rights and disqualification-related unconstitutional rulings

- Examine Constitutional Court rulings that found some disqualifications infringed the freedom to choose a job and limitation threshold thereof
- Basic right infringement by disqualification
 - Review Constitutional Court rulings viewing a disqualification infringed basic rights, in particular, the freedom to choose an occupation and organize applicable legal logics or grounds.
- Improvement for disqualification-related law/regulation
 - Improvements according to legal systems
 - Identify 5 different areas of disqualifications and organize concrete cases.
 - Organize disqualifications in the provisions of Article 43(1). Design a systematic arrangement method based on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State Public Officials Act and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each.
 - Further divide the qualifications for public business affairs set by law into professional qualification, operation licence/permission, and administrative authority entrustment and design improvements.
- Improvement for each type of disqualification
 - Standardize and improve equality of improvement measures regarding public-official disqualifications, right-to-vote/right-to-be-elected disqualifications, separation of disqualification expiration/termination,

civil act amendment and employment limitation by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each type of disqualification in different legal systems, forms of disqualification descriptions and disqualification relations.

III. Expected Benefits

- This thesi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future legislative amendment by offering accurate understanding of current status of laws and regulations subject to re-arrangement under the guideline for legislative review.
- By systematically organizing disqualification descriptions and concerned legal systems, the researchers hope to see a more reasonable legislative process related to disqualification.
- If the equality of disqualifications dealt with in each individual is improved, regulatory rationality and equality will be enhanced as well, ultimately contributing to better basic-right protection.

 key words: disqualifications, legislative systems, original laws/regulations, public organizations, qualifications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9
제 1 장 서 론	19
제 1 절 현황 및 문제점	19
제 2 절 결격사유의 제도적 의의	22
1. 결격사유규정의 입법적 의미	22
2. 결격사유의 기능	23
3. 결격사유 관련법령의 체계	25
제 2 장 결격사유의 유형 및 입법례	31
제 1 절 결격사유의 유형	31
1. 법령체계별 결격사유 유형	31
2. 인허가 관련 결격사유	68
3. 자격제도 관련 결격사유	71
4. 문제점	71
제 2 절 결격사유의 규정방식 유형	78
1. 규정방식 일반	78
2. 개별사유별 규정방식 유형	80
제 3 장 관련 법률관계의 유형	97
제 1 절 분류기준	97

제 2 절 법률관계별 유형	98
1. 고용관계	98
2. 위원 등의 임용관계	99
3. 공직자 등의 임용관계	101
4. 조합임원의 임용관계	102
5. 공단임원의 임용관계	104
6. 법인대표 등의 임용관계	106
7. 수입인의 임용관계	109
8. 전문자격·국가자격 등의 취득관계	111
9. 영업의 면허관계	113
10. 영업의 허가관계	115
11. 영업의 등록관계	118
12. 기타 일반적 제한관련 등	122
제 4 장 결격사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125
제 1 절 기본권 제한의 원칙	125
1. 직업의 자유와 제한 기준	125
2. 주요 결정례 쟁점	126
제 2 절 결격사유 중 기본권침해 여부	127
1.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관련 결격사유	127
제 5 장 결격사유 관련법제 개선방안	137
제 1 절 개선방향	137
1. 체계에 따른 개선방향	137
제 2 절 개별 결격사유별 개선방안	141

1. 공무원 결격사유 정비방향	141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결격사유 정비방향	142
3. 결격사유와 소멸·종료사유의 구별 정비	143
4. 민법 개정 및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과 결격사유	145
5. 개별 결격사유별 법제 정비방안	149
6. 규정형식의 표준화 및 결격사유 간 형평 제고	153

【참 고 자 료】

<자료 1> 체계별 결격사유 규정례	157
<자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원용 법률	191
<자료 3> 특정직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원용하지 않은 경우	203
<자료 4> 공법상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결격사유 관련 법령	205
<자료 5> 파산자 관련 결격사유 법령	209
<자료 6> 영구결격사유 입법례	211
<자료 7> 대한민국 국적을 결격사유로 하는 입법례	213

참 고 문 헌	223
---------------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현황 및 문제점

현행법령에는 각종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약 300여개가 존재하고 있다. 일정한 직업이나 자격군의 사람들에 대하여 처음부터 그 직업이나 자격을 선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종래에 유지하던 직업이나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취지의 제도에 해당한다.

국가공무원법을 비롯한 현행 법령은 임용·고용·위임관계 등에 있어서 해당자의 자격에 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자격제도와 사업의 등록·인가·허가 및 면허와 관련하여 그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일반 법인 등의 내부 인사 관련규정 등에서 원용되고 있다.

각종 임용·고용·위임 등의 관계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이 모델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달리 규정하는 예가 많으며, 사업등의 등록·인가·허가·면허 등의 경우에는 모델적 법령이 없고 각 법령상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변호사를 비롯한 각종 전문자격제도와 국가자격제도의 취득 및 이를 기초로 한 업무의 개시요건과 관련하여도 그 유형에 따라 결격사유가 동일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일 유형의 경우에도 차이가 있다.

개별 관련법령에서 규정되고 있는 결격사유의 유형으로는 행위무능력, 파산, 자격정지·상실, 형벌, 징계, 국적 등이 일반적이지만, 그 밖에 법률관계에 따라 특별한 사유(이해상반행위자등)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최소한 4개 사유에서 8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제상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은 그동안 많이 정비, 개선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의 측면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정도 존재하고 있으며,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사례도 있는 등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개별 법령상의 결격사유규정은 우리 헌법상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 및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최근 선진국의 결격사유관련 규정들이 종전의 절대적 결격에서 사회환경의 변화 정도와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상대적 결격으로 대폭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결격사유 관련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

모든 국민이 사회생활 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들 결격사유에 관한 법령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는 기본적인 법제에 해당한다.

결격사유는 각종 자격 관련 법률관계, 임용 및 위촉 관련 법률관계 등에서 적극적 요건 사유가 아니라 소극적 요건사유로서 기능한다. 일종의 조각(阻却)사유에 해당한다. 법률관계의 형성에 필요한 요건사유가 있더라도 결격사유가 존재하게 되면, 법률관계의 성립 내지 효력발생이 저지된다. 따라서 하나의 법률에서 예외적 규정 또는 특별적 규정 조항으로 기능한다.

한편, 특정한 결격사유는 법률 전반에 걸쳐 공통적 결격사유로 인정되기도 하며, 어떤 결격사유는 그 법률관계에서만 특유하게 적용되는 법률요소로 인정된다.

이렇게 결격사유의 성격이나 기능이 일반적인 요건규정과 구분되기 때문에 결격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관계의 유형과 그 성격에 따라 적용 법리를 분석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적용되는 법률관계와 연계하여 결격사유 각각을 전반적으로 재분석하여 규제적 성격의 결격사유는 가능한 완화·폐지하고, 동일 유형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결격사유간의 형평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로써 국민 일반의

사회생활과 경제활동 등에 있어서의 장애적 요소를 지양하고 법제적 형평성과 통일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각종 결격사유가 제도 본래의 취지에서 볼 때, 헌법의 기본원리나 평등의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없는지 그 법리를 재검토하고, 결격사유가 법제도로 도입된 근거를 법체계상으로 다시 분석하여 봄으로써 법현실의 변화에 따라 정비하여야 할 사유와 각 법률관계에 적절한 결격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법령에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각종 결격사유 중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에 해당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선별하여 정비할 기준의 마련 문제, 세부적인 규정형식상의 표현방법의 통일화문제, 나아가 개별 법률관계에 대하여 결격사유에 의한 제한의 존치여부 문제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현행 법제상 각종 결격사유를 규정한 법제를 추출하여, 해당 법령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등의 관점에서 합리성이 있는 것인지를 분석하여 국민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입법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법리를 정립함은 물론, 법률관계 별로 마련되는 결격사유의 정비방안 등을 활용하여 향후 결격사유에 관한 새로운 입법은 물론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과정이나 각 부처에서의 법령입안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 아래 관련 법령의 정비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결격사유규정의 모델 입법례 및 입법기술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입법의 선진화와 국민친화적인 입법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 2 절 결격사유의 제도적 의의

1. 결격사유규정의 입법적 의미

(1) 헌법상의 기본권보장과 결격사유규정의 관계

법제처가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법령입안심사기준은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일반적 규정방식과 결격사유 규정방식 등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즉, 일반적 유의사항으로서 “결격사유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과잉규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결격사유를 두는 당해 법령의 목적,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공공복리의 증진, 법치주의의 실현 등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다음의 원칙이 지켜지도록”¹⁾ 유의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i) 법률에서 규정할 것
- ii)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하고 내용이 적정할 것
- iii) 공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 iv) 유사제도와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 v) 결격사유의 여러 항목 중 필요한 항목만 규정할 것²⁾

결격사유규정이 헌법상의 기본권보장과 관계되는 측면은 위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라는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결과로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는 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1)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06, 145면 이하.

2) 이러한 원칙의 상세한 의미와 입법례에 관하여는 법제처, 상계 법령입안심사기준 145면~ 147면에 기술되어 있음.

런 까닭에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서 규정할 것’과 ‘공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이란 기본권제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2) 강행규정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특히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제한이라는 점에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 최소규제의 원칙, 형평의 원칙 등이 적용된다고 하겠다.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법률관계가 공법적 법률관계와 사법적 법률관계이냐에 따라 그 사유와 정도를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사법적(私法的) 법률관계에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제한하지 않는 최소한의 규제로서 입법되어야 할 것이며, 공법적 법률관계에서는 그 공법관계 자체가 기본적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폭넓은 결격사유를 둘 수 있다고 하겠다. 공법적 법률관계에서는 오히려 동일 유사한 법률관계에서 결격사유의 형평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더 중요 요소로 될 것이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급효를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장래효만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며, 또한 법률관계의 존속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취소 또는 소멸 절차를 밟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2. 결격사유의 기능

(1) 법률관계의 원시적 불능사유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관계는 다양하다. 약 400여 법률³⁾에서 규정하고 있고 법률관계의 유형도 10여 종에 이른다.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법령을 조문제목이 ‘결격사유’인 법령만 검색한 결과, 시행예고로 중복되는 법령을 포함하여 419건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법령본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법령도 적지 아니하다.

법률관계는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이 있다. 결격사유는 법률관계의 성립 또는 효력발생을 저지하는 무효사유로서 원시적 불능사유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법률관계의 성립요건 내지 효력발생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별도로 결격사유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측면서 보면, 법률행위의 무효사유와 유사하다. 다른 관점에서는 소극적 성립요건 내지 효력발생요건이라고 볼 수도 있다. 입법례에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법률관계의 효력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예도 있다. 즉,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또는 나중에 해당하게 된 자의 경우에 그 법률관계에서 주체에 관한 무효·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이에 해당한다. 원시적 불능사유로 해석할 수가 있다. 형법에서는 반대로 일정한 범죄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특정한 사유가 존재하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구성요건조각사유, 위법성조각사유 및 책임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결격사유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도 있다.

(2) 법률관계의 취소·소멸사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드러나거나 법률관계 성립 이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법적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법률관계의 취소·소멸사유에 해당하는 기능을 한다.

당연 소멸사유로 하는 경우와 이를 근거로 하여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거나 소멸시키도록 하는 규정이 이에 해당한다.

사법적 법률관계에서는 법률관계의 취소·소멸사유는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으로 나뉜다. 결격사유를 의무적 취소사유로 할 것인가는 그 법률관계가 기본권에 관한 것인가 기타의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될 것이다.

3. 결격사유 관련법령의 체계

(1) 결격사유의 법체계

결격사유는 공동되는 사유를 기준으로 그 시초가 되는 일반법으로 「민법」과 「형법」 그리고 특별법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들 법률을 출발점으로 하여 사법의 법리를 공법의 법리로 원용하거나, 형벌에서 행정처분으로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체계에 있다. 일부의 경우 공법상 제한에 머무르고 사법적 법률관계에는 명시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법리적으로 보면, i) 공익을 위한 기본권의 제한(공무담임권, 피선거권 등과 관련되는 결격사유), ii) 공법상 업무집행의 적정성 보장(공법상 책임무능력, 공법상 행위능력), iii) 공법상 업무집행의 적법성·공정성 보장(공법상 위임, 대표, 대리, 행정규제상 적법성) 등을 기초로 하고 있다.

결격사유와 관련되는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리를 공법상의 법리로 원용하는 경우, 공법상의 법리를 사법상 법리로 원용하는 경우,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적절히 각각의 법리를 적용하는 경우 등으로 대별된다.

개별 결격사유를 확대하여 개별 법률관계에서 규정하는 유형, 일반적 결격사유(예컨대 민법상 행위무능력 사유)를 개별 결격사유를 그대로 공법관계에 적용하는 경우, 개별 법률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특별 결격사유를 특별 결격사유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결격사유가 기본권 보장과 관계되는 경우는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관련한 경우이다. 물론 행정규제에 해당하는 경우도 결국 기본권보장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행정규제 관련 법률에서는 행정규제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결격사유로까지 확대한 것은

기본권 보장 측면보다는 법치주의의 확보와 해당 행정규제 자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내재적 한계로서 제한이라 할 수 있다. 형법상 형벌에 의한 자격제한(자격상실, 자격정지)에서 더 나아가 해당 개별 공법관계에 기초한 행정처분을 결격사유로 확대한 것은 일반적 공익이나 기본권보장 보다는 해당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결격사유를 그 기초적 근원규정과 이를 확대, 확장하여 규정한 규정을 체계와 법리를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

결격사유 근원 규정	확장 적용 규정	비 고
민법(행위무능력규정: §5, §10, §13)	공법(결격사유 중 공법상 행위무능력규정)	사법 법리의 공법적 원용
형법(자격상실·정지 규정: §43, §44)	공법(공무원피임용권 제한, 공무원담임권 제한)	개별 공무원법에 준용 또는 인용
	공법(결격사유 중 공법상 책임무능력규정)	개별 공법상 업무집행자(위임, 위탁자 포함) 선임에 구체화
	공법(행정처분: 해임, 파면)	형벌에서 행정처분으로 확대
	공법(행정규제: 인·허가취소)	개별 행정규제 위반 사유로 결격사유 확대
	특수법인의 임원 등 선임제한	공법상 선임제한규정의 민사특별법적 규정(축소입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선고효력: §328이하)	공법(결격사유 중 공법상 책임무능력 규정)	사법 법리의 공법적 원용

(2) 결격사유의 법리

1) 민사법에 기인한 결격사유와 공법에 기인한 결격사유

결격사유는 크게 연원이 되는 법률을 기준으로 구분한다면, 책임무능력과 같은 민사법에 기인한 결격사유와, 자격상실 및 자격정지와 같은 형의 선고와 관련되는 결격사유로서 형법 및 행정법에 기인한 결격사유가 있다.

① 민사법적 결격사유

이는 민법(총칙편)의 법률행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무능력(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및 책임(변제)무능력(파산자)에 관한 법리를 공법관계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공무원으로서 행하는 업무나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는 행위자 본인의 업무능력(행위능력)이 중요하다. 행정의 공신력, 확정력 등을 고려할 때, 취소하거나 무효로 하는 경우가 업무수행자의 행위 능력에 의하여 발생하여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 민사법상의 행위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행위무능력의 보충·보완이 가능하지만, 공법상의 행위 특히 공무의 집행과 관련하여 행정행위의 하자의 보완 내지 보충이란 제도는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행위무능력을 결격사유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파산자의 경우에는 행위무능력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무능력 내지 변제무능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이다. 공무나 법률로 요건을 정한 업무는 최종적으로 국가배상책임으로 귀결되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를 수행한 자는 국가가 배상한 경우에는 구상권의 대상이 되며, 행위자로서 직접 책임도 있는 것이므로 결격사유로 하는 것이다. 파산의 효력으로서 ‘채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28조 이하의 규정은 파산선고로 채무자는 i)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329), ii) 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320), iii) 파산선고 후의 등기·등록(§321) 등의 규정처럼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② 형사법적 결격사유

자격상실·정지사유를 포함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등은 형법상의 결격사유가 공법관계 규제법리(자격형)의 적용(형사처벌: 선고유예 이상 형벌을 받은 자) 및 확장(행정처분: 파면·해임처분)에 해당한다.

형법 제43조는 i) 형의 선고로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인정되는 자격상실, ii) 자격상실·정지 형의 선고로 인한 결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각종 결격사유 관련 법률에서는 형이 종료된 이후 일정한 기간 이른바 결격기간 동안 자격을 상실하도록 결격사유를 확장하고 있다.

형법상 자격상실의 사유는 형의 선고에 따른 당연 상실(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과 자격상실의 형의 선고이다(형법 제43조제1항). 자격정지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형법 제43조제1항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형의 선고로 인한 자격상실에는 행정형벌을 포함하고 있고, 특히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당해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된 경우는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이다.

③ 행정처분에 근거한 결격사유

행정처분 중 신분과 관련된 처분으로서 「파면·해임처분」을 결격사유로 하는 경우이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처럼 「파면·해임처분」의 근거법령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와, 근거되는 법령명을 명시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가 있다. 근거법령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석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를 모든 「파면·해임처분」이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지나치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게 된다.

또한 해당법률 위반자에 대한 제재로서 각 개별법률상의 행정처분(취소처분, 행정벌)을 받은 사실을 결격사유로 한다.

행정처분에 근거한 결격사유는 영구적 결격사유로 하는 경우보다 결격기간을 두어 결격사유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자격법제와의 관계

① 자격취득요건과 결격사유

자격기본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을 따르면, 결격사유는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을 취득 등과는 관계가 없다.

“자격”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으로 정의(자격기본법 제2조제1호)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의 취소·소멸사유’와 동일한 개념으로 「결격사유」를 정의하는 것은 무리이다. 자격은 기본적으로 직무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국가직무능력표준’, ‘자격체제’ 등과 관련된다. 반면에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법률관계는 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응시자격의 제한, 자격의 당연취소사유·임의취소사유는 일반적 의미의 결격사유 개념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률관계 등의 취소사유는 좁은 의미의 결격사유라고 볼 수가 없다. 응시자격의 제한은 원시적 사유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자격의 당연취소사유·임의취소사유 중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제 2 장 결격사유의 유형 및 입법례

제 1 절 결격사유의 유형

1. 법령체계별 결격사유 유형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유형을 그 제한되는 자격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i) 공무원(특정직 공무원 포함)이 되는 자격에 관한 법률, ii)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법률, iii)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법령상 위원회 위원, 행정권한의 수임·수탁자, 국립법인의 임직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에 관한 법률, iv)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자유업의 요건인 전문 자격, 인·허가·등록업)에 관한 법률, iv)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에 관한 법률(공익법인, 특수법인, 법정 재산관리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나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결격사유 규정들은 다시 그 제한의 정도나 결격사유의 종류 등을 기준으로 그 연원이 되는 법률과 이를 원용하는 법률로 정리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에서 가장 많이 원용하거나 준용하는 법률인 「국가공무원법」(제33조)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제2호)를 기준으로 그 체계를 정리하고, 또한 그 업무의 성격을 파악하는 기준으로서 「별칙에서 공무원 의제」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함께 고려하여 살핀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원용 법률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나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결격사유 규정들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원용하여 규정하거나, 여기

에 별도의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법률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2011.10.26 재보권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 특별검사
- 「가축전염예방법」 제43조제2항제1호: 지정검역물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
- 「감사원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단서: 감사원 개방형직위
-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 특별검사
- 「검찰청법」 제33조제1호: 검사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10조제2호: 편찬사업회 임원
- 「경찰법」 제6조제4항제4호: 경찰위원회 위원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제2항제1호나목: 국립·공립 및 사립학교 강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1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 「공무원연금법」 제10조제2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임원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익법무관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7조제2호: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중방역수의사
-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6제1항제2호: 과학기술위원회 위원
-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5조제2호: 교사임용후보자
-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정책연구위원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약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교원 지위향상심의회 위원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1호: 교육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2: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항제2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서울대학교 임원
-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임원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인천대학교 임원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9조제4항: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8조제4항: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 국립중앙의료원 임원
- 「국회법」 제43조제3항: 위원회 심사보조자
- 「군무원인사법」 제10조제3호: 군무원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제2호: 기술지주회사 임원
- 「노동위원회법」 제12조: 노동위원회 위원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2: 공중보건 의사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제2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위원

제2 장 결격사유의 유형 및 입법례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2호: 경호처 직원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
- 「대한민국학술원법」 제4조의2제1항: 학술원 회원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10조제2호: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임원
- 「독도기념관법」 제10조제1항제1호: 독립기념관 임원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 임원 및 직원
- 「무역보험법」 제47조제2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임원 및 직원
- 「문화예술진흥법」 제27조제3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명예시장·군수
-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항제1호: 교정법인의 임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0조제2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 「방송문화진흥회법」 제8조제3호: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 「방송법」 제48조제3호: 한국방송공사 이사
- 「한국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한국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법률구조법」 제15조제2호: 법률구조공단 임원
- *「법원조직법」 제72조제3항제1호: 사법연수생 면직사유
-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2제2호: 별정우체국 피지정인
- 「병역법」 제34조의2제6항: 징병검사전담의사 *계약직공무원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제2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임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 「사료의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2호: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3조제1항: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임원
- 「사립학교법」 제22조제1호: 학교법인의 임원
-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31조: 사법연수원 연수생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0조제3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2항 제2호: 기술지주회사 임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9조제1호: 근로복지공단 임원
-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1조의4제1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
- 「서울대학병원 설치법」 제7조제6항: 대학병원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
- 「서울치과대학병원 설치법」 제7조제5항: 치과병원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치과병원장
-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제5조: 선원노동위원회 위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제1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임원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제1호: 명예직연구공무원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3조제3항제1호: 지정검역물 보관관리인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7항: 한국언론진흥재단 임원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5호: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제2 장 결격사유의 유형 및 입법례

- 「예금자보호법」 제16조제2호: 예금보호공사 임원 및 직원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제6조제1항: 예비군부대 지휘관 및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운영을 위한 지휘관과 이를 보좌하는 인력
- 「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제1호: 외무공무원
- 「우편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우편물방문접수 업무 수탁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 「원자력진흥법」 제6조: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임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1조제1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제1호: 한국학교법인 임원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0조의2제4호: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9조제1항제2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 「청원경찰법」 제5조제2항: 청원경찰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산림보호직원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제1항: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의3제6항: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임원
- 「치료감호법」 제38조제1호: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제2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 국기원 임원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학교안전공제회 임원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제3호: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8조제2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임원
- 「한국마사회법」 제29조제1항제2호: 마사회 임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0조제1항제1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원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0조제2호: 한국사학진흥재단 임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9조제1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임원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8조제1호: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원
- 「한국연구재단법」 제7조제1항: 한국연구재단 임원
- 「한국은행법」 제17조제2호: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한국장학재단 임직원
- 「한국투자공사법」 제22조: 한국투자공사임원
- 「한국환경공단법」 제10조제1항제1호: 한국환경공단 임원
- 「항만공사법」 제13조제1항제1호: 항만위원회 위원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0조: 해양안전심판원 심판원장, 심판관
- 「행정심판법」 제9조제4항제2호: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2제2항: 예비군부대 지휘관
-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6항제1호: 헌법연구관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 휴면예금관리재단 임직원

위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를 원용하고 있는 법률을 다음과 같이 「적용대상 및 법령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1>과 같다.

- 가. 특수 공무원·공무원 특별법
 - 나. 공공기관 임원·공공기관 설립·운영법
 - 다. 공공위원회 위원·공공위원회 설치법
 - 라. 국·공립법인 임원·국공립법인 설립법
 - 마. 특수법인 임원·특수법인 설립법

일반적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만을 그 결격사유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몇몇 법률의 경우에는 직원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특별한 근거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예컨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의 휴면예금관리재단 임직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한국장학재단 임직원, 「무역보험법」 제47조제2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임원 및 직원 등이 직원까지 결격사유 규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물론 별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나름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업무의 공공성 내지 공무원성도 없는 경우에는 직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33의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규제를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된다.

<표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원용 법령의 대상 유형

가. 특정직·특수 공무원

대 상	결격사유 법령 조항	비 고
감사원 개방형직위	「감사원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단서	같 음
검 사	「검찰청법」 제33조제1호	

대 상	결격사유 법령 조항	비 고
경호처 직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2호	
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7조	같 음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4조	같 음
공중보건 의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2	같 음
교사임용후보자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5조제2호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1호	
국립·공립 및 사립학교 강사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제2항제1호나목	
군무원	「군무원인사법」 제10조제3호	
명예시장·군수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명예직연구 공무원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사법연수생	「법원조직법」 제72조제3항제1호	면 직 사유
사법연수원 연수생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31조	같 음
예비군부대 지휘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2제2항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제1호	
위원회 심사보조자	「국회법」 제43조제3항	
정책연구위원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지휘관·보좌 인력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제6조제1항	

제 2 장 결격사유의 유형 및 입법례

대 상	결격사유 법령 조항	비 고
징병검사전담 의사	「병역법」제34조의2제6항	
특별검사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	
특별검사	「2011.10.26 재보권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	공무원, 당원
한국학교법인 임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제1호	
해양안전심판원 심판원장, 심판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 음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6항제1호	

나. 공공기관 임원

대 상	결격사유 법령 조항	비 고 (공무원의제)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1호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공무원연금법」 제10조제2호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9조제1호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법」 제10조제1항제1호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	임직원

대 상	결격사유 법령 조항	비 고 (공무원의제)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법」 제15조제2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3조제1항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예금보호공사	「예금자보호법」 제16조제2호	임직원
유네스코한국 위원회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위 원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한국교육방송 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제3호	
한국교육학술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8조제2호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법」 제29조제1항제2호	
한국무역보험 공사	「무역보험법」 제47조제2호	임직원
한국방송공사	「방송법」 제48조제3호	이 사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제2호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0조제1항제 1호	
한국사학진흥 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0조제2호	

제 2 장 결격사유의 유형 및 입법례

대 상	결격사유 법령 조항	비 고 (공무원의제)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9조제1호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8조제1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7항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법」 제7조제1항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 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	
한국자산관리 공사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제2호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1조 제1호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제1항	임직원
한국출판문화 산업진흥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의3제6항	
한국투자공사	「한국투자공사법」 제22조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법」 제10조제1항제1호	
항만위원회	「항만공사법」 제13조제1항제1호	위 원
휴면예금관리 재단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	임직원

다. 국가적 차원의 위원회 위원

대 상	결격사유 법령 조항	비 고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의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경찰위원회	「경찰법」 제6조제4항제4호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7조제2호	*민간 위원
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6제1항제2호	
교원지위향상심의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약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보훈심사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항제2호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법」 제12조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제2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직원 포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제27조제3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제 2 장 결격사유의 유형 및 입법례

대 상	결격사유 법령 조항	비 고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0조제3호	
중앙산지관리 위원회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1조의4제1항	
선원노동위원회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제5조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 조제2항제5호	
영화진흥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 조제3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진흥법」 제6조	
지역신문발전 위원회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0조의2제4호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 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9 조제1항제2호	
치료감호심의 위원회	「치료감호법」 제38조제1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제2호	
한국방송통신 위원회	「한국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대 상	결격사유 법령 조항	비 고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법」 제17조제2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9조제4항제2호	

라. 국립·공립 법인 임원

대 상	결격사유 법령 조항	비 고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인천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9조제4항	당연직 이사 외의 임원
국립치과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8조제4항	상 동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	임 원
대한민국학술원	「대한민국학술원법」 제4조의2제1항	회 원
학교법인	「사립학교법」 제22조제1호	
서울대학병원	「서울대학병원 설치법」 제7조제6항	당연직 이사 외 임원
서울치과대학병원	「서울치과대학병원 설치법」 제7조제5항	상 동

마. 기타 특수법인

대 상	결격사유 법령 조항	비 고
편찬사업회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10조제2호	임 원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10조제2호	상 동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0조제2호	상 동
방송문화진흥회	「방송문화진흥회법」 제8조제3호	상 동
국기원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	상 동

바. 지정 대행 기관(인) · 사법인 임원

대 상	결격사유 법령 조항	비 고
지정검역물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	「가축전염예방법」 제43조제2항제1호	
교정법인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항제1호	
별정우체국 피지정인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2제2호	
우편물방문 접수 업무 수탁자	「우편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청원경찰	「청원경찰법」 제5조제2항	
산림보호직원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대 상	결격사유 법령 조항	비 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제1항	
기술지주회사 임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제2호	
기술지주회사 임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 률」 제36조의2제2항제2호	
지정검역물 보관관리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3조제3항제1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원용 법률

결격사유로 제한되는 법률관계 중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를 원용한 법률이 상당하다.

현행법은 법인을 민사법상 i)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ii)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iii)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설립한 특수법인, iv)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등으로 그 적용법률을 달리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라 그 대상범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고찰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은 3가지 법률에서 기본적인 대상 범위를 정의하고 있다. i)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제2조제4호), ii) 「전자정부법」의 공공기관(제2조제3호), iii)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제4조) 등이다. 이 가운데 전자정부법상의 공공기관 범위가 가장 넓다.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제2조제4호)

이 법에서의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과 「감사원법」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의 대상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영 제3조)가 해당된다.

- i)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 ii)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다만,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법인은 제외한다.
- iii)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
- iv) 그 밖에 「감사원법」 제23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 대상기관 중 관장 사무, 예산 규모 및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원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 또는 단체는 제외.

② 「전자정부법」의 공공기관(제2조제3호)

전자정부법상의 “공공기관”이란 다음의 기관을 말한다.

- i)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 ii)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iii)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iv)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v) 그 밖에 대통령령(제3조)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

이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나누어 지정한다. 여기에는 정부출자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이 대상이 된다. 그 세부기준을 아래와 같다.

i)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ii)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iii) 기타 공공기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당시 넓은 의미의 공공기관은 556개(2002.11), 350개(2004.1), 575개(2005.2)로 조사되었다.⁴⁾ 이를 다시

4) 기획예산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설명자료, 2006.8, 78면.

지정대상에 관한 요건을 기준으로 보면, i) ‘특별한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을 한 기관’이 122개, ii) ‘정부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1을 초과하는 기관’이 93개, iii)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이 27개, iv) 이러한 기관(i~iii)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이 5개, v) ‘i~iv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이 58개, vi) ‘i~iv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이 9개, 총 314개 기관을 동법의 적용대상으로 상정하였다.⁵⁾

이상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현행법상 결격사유 규정을 조사, 분석하면, i)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를 그대로 원용하거나 ii)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호를 원용하는 입법례가 다수이며, 다른 경우는 iii) 개별 결격사유규정을 두는 대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규정을 두어 해결하는 경우, 그 밖에 iv) 별도의 개별적인 결격사유를 두거나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는 경우 등으로 나타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공공기관 관련 법령가. 제34조를 원용한 경우는 다시 i) 제34조를 원용한 경우, ii) 제34조 제2호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원용한 경우로 나뉜다.

아래 <표2>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결격사유 규정을 원용한 입법례이다.⁶⁾

5) 상계 설명자료, 82면~84면 참조.

6) 상세한 규정 내용은 <자료 2> 참조바람.

<표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공공기관 관련 법령

가. 제34조를 원용한 경우

법령명	기타 준용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6조	-

나. 제34조제2호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원용한 경우

법령명	기타 준용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제27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1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0조제1항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9조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8조	-
「한국환경공단법」 제10조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 경우

법령명	기타 준용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민법 재단법인규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상동(기초과학연구원)

제 2 장 결격사유의 유형 및 입법례

법령명	기타 준용법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	상동(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	상동(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상법 중 주식회사 규정
「산업발전법」 제32조	민법 재단법인규정(한국생산성본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7	민법 재단법인규정(한국석유관리원)
「선박안전법」 제59조	민법 재단법인규정(선박안전기술공단)
「수자원관리법」 제55조의8	민법 재단법인규정(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민법 재단법인규정(시설안전관리공단)
「암관리법」 제45조	민법 재단법인규정(국립암센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4조	상동(에너지관리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8조	상법 중 주식회사규정(인천국제공항공사)
「자연공원법」 제69조	민법 재단법인규정(국립공원관리공단)
「전기사업법」 제38조	민법 사단법인규정(한국전력거래소)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31조	민법 재단법인규정(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0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법령명	기타 준용법률
「주택법」 제80조	상법 중 주식회사규정(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4조	상동(한국지역난방공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8조	민법 재단법인규정(청소년상담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의7	상동(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	상동(한국출판산업진흥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3조	상동(대한지적공사)
「한국가스공사법」	상법 중 주식회사규정(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법」 제19조	상동(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법」 제17조	-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8조	-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23조	민법 재단법인규정(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 제23조	민법 재단법인규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0조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법」 제19조	상법 중 주식회사규정
「한국석유공사법」 제18조	- (한국석유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22조	- 민법 재단법인규정

제 2 장 결격사유의 유형 및 입법례

법령명	기타 준용법률
「한국전력공사법」 제19조제2항	상법 중 주식회사규정
「한국조폐공사법」 제14조	-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37조	민법 재단법인규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7조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16조	민법 재단법인규정
「항만공사법」 제2조	- (항만공사)

(3) 제반 운영 등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서,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을 원용한 특수법인

이에 해당하는 입법례로는 「한국연구재단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공공기관에 관한 법리나 입법기술상 적절하지 않다.

○ 「한국연구재단법」

제 6 조(임원 등) ① <생 략>

②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면한다.

③ ~ ⑥ <생 략>

제 7 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② 재단의 임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4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결격사유 규정 없는 경우: 설립근거법 이외에 민법을 준용하는 특수법인

특수법인 중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입법례가 적지 아니함. 즉, 이들은 특수법인이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해당 특수법인은 다음과 같다.

- i) 한국사학진흥재단
- ii)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20)
- iii)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그 규정형식은 아래와 같다.

제25조(민법의 준용) 해양과학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특수법인 중 특별한 준용 규정없이 결격사유 관련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전혀 결격사유 관련 규정을 두지 않은 특수법인은 다음과 같다.

- 「한국철도공사법」
- 「한국해운조합법」
- 「항공법」 중 ‘한국항공진흥협회’
- 「환경정책기본법」 중 ‘환경보전협회’(§59)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가 50% 이상 출자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데에도 불구하고 다른 입법례와는 달리 아무런 결격사유 관련 규정도 준용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그밖에 법정 위원회 중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공·철도 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처럼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원용하지 않고 별도의 결격사유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통상의 정부위원회에 준하여 관련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공무원 결격사유와 벌칙적용시 의제규정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를 원용하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결격사유 규정은 해당 법령이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그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공무이거나 공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원용하거나 이에 준하여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령상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규정을 두면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원용하는 경우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조사, 분석한다.

① 양 규정을 함께 두고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을 i) 특정직·계약직·명예직 공무원 등, ii) 위원회 위원, iii) 국립 법인 임원, iv) 공공기관 임직원, v)공무 대행·위탁기관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특정직·계약직·명예직 공무원 등

- 「2011.10.26 재보권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 특별검사
-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 특별검사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제2항제1호나목: 국립·공립 및 사립학교 강사
- 「국회법」 제43조제3항: 위원회 심사보조자

○ 위원회 위원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7조제2호: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6제1항제2호: 과학기술위원회 위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2: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항제2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 「노동위원회법」 제12조: 노동위원회 위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제2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위원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

제 2 장 결격사유의 유형 및 입법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제2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1조의4제1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5호: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0조의2제4호: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9조제1항제2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제2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
 - 「한국은행법」 제17조제2호: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 「행정심판법」 제9조제4항제2호: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국립 법인 임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서울대학교 임원
 -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임원
- 공공기관 임직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1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 「공무원연금법」 제10조제2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임원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원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 임원 및 직원
- 「법률구조법」 제15조제2호: 법률구조공단 임원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제2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임원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3조제1항: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임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9조제1호: 근로복지공단 임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임원
- 「예금자보호법」 제16조제2호: 예금보호공사 임원 및 직원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임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1조제1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원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의3제6항: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임원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학교안전공제회 임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0조제1항제1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원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0조제2호: 한국사학진흥재단 임원
- 「한국연구재단법」 제7조제1항: 한국연구재단 임원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한국장학재단 임직원
- 「한국투자공사법」 제22조: 한국투자공사임원
- 「한국환경공단법」 제10조제1항제1호: 한국환경공단 임원

제 2 장 결격사유의 유형 및 입법례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0조: 해양안전심판원 심판원장, 심판관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 휴면예금 관리재단 임직원

○ 공무 대행·위탁기관 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제2호: 기술지주회사 임원
-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항제1호: 교정법인의 임원
-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2제2호: 별정우체국 피지정인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2항제2호: 기술지주회사 임원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3조제3항제1호: 지정검역물 보관관리인
- 「우편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우편물방문접수 업무 수탁자

②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만 원용한 법령(별칙 적용시 공무원의제 규정 없는 경우)

이 경우는 앞에서 살핀 양 규정을 함께 두고 있는 입법례와 그 분류유형을 동일하게 한 현황을 분석하면, 특별히 그 업무의 성격이나 공무원 해당여부에 차이가 없다. 다만, 별칙 적용시 공무원을 의제한다는 것은 그 성격이 공무에 해당하거나 준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규정을 원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형별 입법례>

○ 특정직·계약직·명예직 공무원 등

- 「감사원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단서: 감사원 개방형직위
- 「검찰청법」 제33조제1호: 검사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익법무관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중방역수의사
-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5조제2호: 교사임용후보자
-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회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정책연구위원회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1호: 교육공무원
- 「군무원인사법」 제10조제3호: 군무원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2: 공중보건의사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2호: 경호처 직원
-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명예시장·군수
- * 「법원조직법」 제72조제3항제1호: 사법연수생 면직사유
- 「병역법」 제34조의2제6항: 징병검사전담의사 *계약직공무원
- 「사립학교법」 제22조제1호: 학교법인의 임원
-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31조: 사법연수원 연수생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명예직연구공무원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제6조제1항: 예비군부대 지휘관 및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운영을 위한 지휘관과 이를 보좌하는 인력
- 「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제1호: 외무공무원
-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2제2항: 예비군부대 지휘관

제2장 결격사유의 유형 및 입법례

-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6항제1호: 헌법연구관

○ 위원회 위원

- 「경찰법」 제6조제4항제4호: 경찰위원회 위원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약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교원 지위향상심의회 위원
- 「문화예술진흥법」 제27조제3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 「한국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한국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사료의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0조제3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제5조: 선원노동위원회 위원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 「원자력진흥법」 제6조: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제1항: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치료감호법」 제38조제1호: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

○ 국립 법인 임원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인천대학교 임원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9조제4항: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8조제4항: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 국립 중앙의료원 임원
- 「대한민국학술원법」 제4조의2제1항: 학술원 회원
- 「서울대학병원 설치법」 제7조제6항: 대학병원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
- 「서울치과대학병원 설치법」 제7조제5항: 치과병원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치과병원장

○ 공공기관 임직원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10조제2호: 편찬사업회 임원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10조제2호: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임원
- 「독립기념관법」 제10조제1항제1호: 독립기념관 임원
- 「무역보험법」 제47조제2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임원 및 직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0조제2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 「방송문화진흥회법」 제8조제3호: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 「방송법」 제48조제3호: 한국방송공사 이사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7항: 한국언론진흥재단 임원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 국기원 임원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제3호: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8조제2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임원
- 「한국마사회법」 제29조제1항제2호: 마사회 임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9조제1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임원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8조제1호: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원
- 「항만공사법」 제13조제1항제1호: 항만위원회 위원

제 2 장 결격사유의 유형 및 입법례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제1호: 한국학 교법인 임원

○ 공무 대행·위탁기관 등

- 「가축전염예방법」 제43조제2항제1호: 지정검역물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
- 「청원경찰법」 제5조제2항: 청원경찰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청원산림보호 직원

③ 개선방향

- i) 국가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아래의 「특정직·계약직·명예직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경우 이므로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 ii) 국가적 차원 내지 정부 차원의 위원회는 그 구성이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과 민간인인 위촉(임명)위원으로 구성된다. 그 업무는 당연히 공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벌칙적용시 민간위원에게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법령 중에는 이러한 성격의 위원회 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위원회(행정위원회 포함)는 예외없이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규정을 두는 것이 입법원칙에 부합한다. 이와 관련하여 결격사유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을 인용

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형평상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이외에 특별한 결격사유를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에 해당하지만 공무원인 당연직위원보다 더 강하게 결격사유를 둘 이유는 없다고 본다.

iii) 국립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를 원용하는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국립법인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므로 특별한 추가적 결격사유를 두는 것은 형평상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별히 엄격하게 할 이유도 없다. 일부 국립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이외에 직원에 대하여도 국가공무원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예가 있는데 이는 임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전의 국립법인은 임직원이 국가공무원이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법인화하여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설립하였지만 재원의 대부분을 출연금으로 하는 공공기관이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과 다르게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iv)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결격사유는 일부(한국무역보험공사, 청원산림보호직원)를 제외하고 임원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임직원에 대하여 별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의 기준이 명확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는 공공기관 중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은 결격사유 중 하나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를 원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소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설립근거법률에서의 결격사유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결격사유는 동일하게 규정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설립근거법률보다 신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그밖에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결격사유보다 더 엄격한 규정을 두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고 본다. 공공성이 적은 기관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더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 v) 공무 대행·위탁기관 등의 경우에는 입법체계상 직접 대행·위탁기관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법률에 규정하기는 어렵다.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지만, 상법상 회사나 민법 등의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등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법률로 규정할 수가 없다. 그런 까닭에 별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으로 공무 대행 또는 위탁 기관 등에 대하여 공공성 내지 공익성을 지키도록 간접적인 방법을 둔 것이다. 이 경우도 임용을 감독청에 승인 받도록 한 경우(청원경찰법 제5조) 또는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임용이 당해 법인의 자치에 속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현행 관련 법령도 이에 따른 제한적 입법례만 있다. 합리적이라고 본다.

(7) 개선방안

이상을 종합하면,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제1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1조의 규정처럼 각각 「국가공무원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원용하는 방식

제2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처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전부를 원용하는 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입법례처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규정방식상 중복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른 대부분의 예처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를 원용하는 규정과 다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의 결격사유를 원용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중복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유의할 것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지정된 기관에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설립근거법률에서 각각의 결격사유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델 입법시안>

<제 1 안>

제○○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 2 안>

제○○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인허가 관련 결격사유

영업 인·허가에 관한 결격사유를 정하는 형식은 i)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형식과 ii)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영업을 할 수 없다」는 형식 두 가지가 있다.

한편, 결격사유 발생의 효과는 다시 4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되는 바, i) 결격사유의 발생을 인·허가의 실효요건으로 하는 경우, ii) 당해 인·허가의 당연취소요건으로 하는 경우, iii) 당해 인·허가의 임의취소요건으로 하는 경우, iv) 결격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이다.⁷⁾

인·허가영업에 있어서 결격사유는 최소한 영업의 개시를 위하여 필요한 요건에 해당하고, 결격사유의 발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영업활동을 계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에도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된다고 해석할 수가 있다. 따라서 결격사유를 어떠한 사유로 하는가 하는 문제와 동일·유사한 인·허가 영업에 형평성을 유지하여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영업의 면허, 허가, 등록에 따라 결격사유의 종류가 어떻게 다르게 규정되고 있는지, 그리고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만 살펴 보고, 구체적인 정비방안에 대하여는 節을 바꾸어 따로 분석한다.

(1) 면허영업의 경우

1) 공통적 결격사유

결격사유를 두고 있는 면허관계의 법령(12개) 중 공통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결격사유는 「한정자산자·금지자산인 자」뿐이다. 결격사유

7) 정태용, 전계논문, 188면 및 191면.

중, 「파산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중인 자」는 몇 개 법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밖의 「선고유예, 자격상실, 파면처분, 해임처분, 미성년자」 등의 결격사유는 오히려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2) 개별적 결격사유

「면허의 취소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하는 예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서만 규정하고 있고, 「국적관련」 결격사유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미성년자」를 결격사유로 하는 예는 오히려 소수에 해당한다.

개별 면허영업에 특유한 결격사유의 예로는, i)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공중위생관리법§6④), 약사법§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5), ii) 전염병자(공중위생관리법§6④), iii) 약물중독자(공중위생관리법§6④, 약사법§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5), iv)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겸하는 경우(주세법§10 4호), v) 조세채납(주세법§10 5호) 등이다.

(2) 허가영업의 경우

1) 공통적 결격사유

「한정자산자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예외없다. 그러나 「파산자」나 「미성년자」를 결격사유로 하는 예는 소수에 해당한다. 「국적관련」 사유는 규정한 예가 없고, 「행정처분」을 결격사유로 하는 예는 아주 적다.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결격사유로 하는 예는 3개 법률뿐이다.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 대부분 규정하고 있으나, 면허영업의 경우와는 달리 「징역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제한하여 규정하는 예가 적지 않다. 「선고유예」나 「자격상실」, 「파면처분」, 「해임처분」을 결격사유로 하는 예는 소수에 해당한다.

2) 개별적 결격사유

개별법령의 특유한 결격사유로 i) 불법단체를 구성하거나 자금을 제공하는 자(「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ii) 대한민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저작권법 §105), 등이 있다.

(3) 등록영업의 경우

1) 공통적 결격사유

영업등록과 관련하여 결격사유를 두고 있는 법령(56개) 중 완전히 공통되는 결격사유는 「한정치산자·금치산자」를 제외하고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부분 「파산자」,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刑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자격상실」, 「파면처분」, 「해임처분」, 및 「미성년자」를 결격사유로 하고 있는 예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앞의 면허영업이나 허가영업의 경우와 다르게 나타난다. 「국적관련」 사항을 결격사유로 하는 경우는 원자력법시행령뿐이다.

2) 개별적 결격사유

개별 법령에서 특유하게 두고 있는 결격사유로는 보험설계사의 등록 결격사유 중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보험업법 §84② 10호)를 들 수 있다.

3. 자격제도 관련 결격사유

(1) 공통적 결격사유

「한정자산자등」은 공통으로 규정되고 있고, 「파산자」를 결격사유로 하는 경우도 몇 개 법률(공중위생관리법 §6: 이용사 및 미용사, 축산법 §12: 인공수정사)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규정을 두고 있다. 그밖에는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나 「집행유예기간중」에 대하여 결격사유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상당하다. 「선고유예」나 「자격상실」, 「파면처분」을 결격사유로 하는 예는 많지 않고, 「미성년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도 절반정도에 불과류, 규정하고 있지 결격사유는 도선법에서 규정할 뿐이다.

특징이라면, 자격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 중인 자」를 결격사유로 하지 않고 있는 예가 절반을 넘는다는 점이다. 이는 결격사유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하여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지 아니면 입법상의 누락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2) 개별적 결격사유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관세사법 §5), 「자격이 취소된지 3년(2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자격기본법),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야생동식물보호법 §46: 수렵면허) 등의 결격사유를 두고 있는 예도 있다.

4. 문제점

법령상의 결격사유에 관한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결격사유 중 일부는 단순히 주의적 규정에 불과한 경우가 있고, 강행적·제

한사유로서 반드시 두어야 할 경우가 있으며, 그밖에 관련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둘 수 있는 결격사유가 있다고 본다.

법령의 규정형식의 통일 내지 정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주의적 결격사유조항은 관련 법령에서 공통적으로 규정을 두든지 삭제하는 것이 일반인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이 당해 법률관계의 성격이나 취지로 보아 마땅한 경우에는 입법의 흠결 내지 누락으로 보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특정한 법률관계에서 정책적 고려 등에 의하여 둘 수 있는 결격사유는 가능한 한 축소하거나 두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 삭제해야 할 결격사유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행위능력과 관련된 사항으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있고, 「파산자」나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자격정지·자격상실」도 마찬가지이다.

「파산자」나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자격정지·자격상실」은 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과 공시된다는 점 및 개별 법령에 규정을 두고 있든 아니든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일정한 지위나 활동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특별히 개별법령에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1) 행위능력 관련사항

행위무능력을 결격사유로 할 것인가 여부는 3가지 관점에서 다르게 판단되어야 한다. 첫째는, 본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하거나 위임관계에서와 같이 대리인의 지위를 함께 가지는 경우이며, 셋째는 기관의 구성원이거나 업무보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이다.

i) 본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전형적인 경우가 전문자격을 필요로 하는 자유업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물론 민법상의 무능력제도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즉, 미성년자가 예외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지는 경우도 포함이 된다.

이 경우에도 다시 순수한 사적 법률관계에 있는 경우와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와 관련하여 법률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로 구분하여 결격사유로서의 행위무능력 문제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순수한 사적 자치의 분야와 사적 자치가 제한되는 분야로 구분하여야 한다. 결격사유에 의한 제한이유가 공적 질서나 고도의 직업적 윤리성 확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적 기술 자체의 보유 문제는 행위능력과 별개의 문제로 논의되어야 한다.

신고영업의 경우에 결격사유에 의한 제한을 가능한 한 배제하여야 하는 이유는 영업활동으로서 사적 자치가 아주 강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상법에서 미성년자가 무한책임사원의 자격에서 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것도 같은 취지이다. 반면에 면허·허가·등록등의 영업은 사적 자치가 크게 제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법률행위의 당사자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래의 기관 구성원 내지 업무보조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로 논의된다.

특별법에 그 설립의 근거를 두고 있는 특수법인이나 공익법인의 임원⁸⁾은 그 공익적·비영리적 성격 때문에 민법 제5조제1항 단서(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제8조(영

8) 특수법인 등 공익적 법인의 대표 내지 임원은 민법상 법인의 임원과는 다른 선임 절차와 감독관청의 승인등이 부가된다는 점에서 법인의 대표권에 관한 민법 제59조제2항(대리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이 점에서 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와 분리하여 본인으로서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 포함시켜 논의한다.

업의 허락),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및 제59조(이사의 대표권)제2항, 상법 제6조(무능력자의 영업과 등기), 동법 제7조(무능력자와 무한책임사원) 및 동법 제8조(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등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행위무능력자에 대하여 예외없이 결격사유로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민법등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한 취지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를 결격사유로 명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에, 신고영업의 경우와 같이 영리법인이나 사업자에 관하여는 오히려 행위무능력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가 된다는 점에서 대리할 수 없는 성질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거나 현실적으로 무능력의 보충에 의해서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청소년등의 보호가 필요한 영업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허·허가·등록영업등의 경우에는 전문자격의 소지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전문자격의 취득요건 중 소극적 요건으로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경우(응시자격의 제한)와 영업의 면허·허가·등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경우 및 양자를 병행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가 있다. 양자를 병행하여 규정하는 경우는 이중적 규제나 과도한 규제가 될 여지가 있다. 응시자격의 제한방식보다는 영업의 면허·허가·등록등의 결격사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성년자가 한정치산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치산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 행위무능력상의 공백기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⁹⁾에서처럼, 해당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상에 행위무능력사유를 두지 않는다면, 그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고, 이후에 성년이 된 경

9) 高翔龍, 민법총칙, 법문사, 1993, 124면; 金相容, 민법총칙, 법문사, 1995, 188면; 李英俊, 민법총칙, 박영사, 1995, 810면.

우에는 곧바로 면허·허가·등록을 받을 수가 있어 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이를 자격취득의 결격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에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므로 자격소지를 적극적 요건으로 하고 있는 인허가영업의 경우에는 행위무능력사유가 이중적 제한이 될 수가 있게 된다.

ii) 대리인·수임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

이는 위임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로, 수임인은 위임인의 대리권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법은 「대리권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을 대리권의소멸사유로 규정하고 있고(제127조제2호), 위임관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위임은 당사자 일방의 사망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종료된다. 수임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같다」(제690조)고 규정하고 있다. 수탁자의 지위도 수임인의 지위와 다를 바가 없다는 점에서 신탁법 제10조(수탁능력)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관련 법령은 주로 수탁자의 임무종료시의 관련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수임인이나 수탁자의 결격사유를 제외하고는 좁은 의미의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iii) 기관의 구성원 내지 업무보조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기관의 구성원으로는 심의·보조기관으로서의 각종 위원회 위원이 이에 해당한다.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 등의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단체의 대표기관도 아니며, 업무집행기관도 아니다. 따라서 위원등은 이러한 보조기관의 구성원에 불과하며, 독립된 당사자의 성격은 없다. 물론 위원회가 정부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이나 아니면 공공법인에 설치된 위원회냐에 따라 그 공익성과 윤리성의 정도 차이는 있겠으나, 개별 법령상 설치근거를 가진 위원회의 경우에는 이 점에

서의 구분을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굳이 구분한다면, 정부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은 공직자에 해당시키고, 공공법인에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은 공익적 활동에 종사하는 정도로 된다.

이들 위원은 그 직무의 공익성이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로 아주 큰 경우이므로 결격사유에 의한 제한을 많이 받게 할 필요가 있다. 행위무능력에 관한 결격사유는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령제한의 상한을 높이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다. 자격상실에 관한 결격사유는 당연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전혀 상관 없다.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

한편, 업무보조자에 해당하는 고용관계상의 종사자도 독립된 법률관계의 주체 내지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위원등과 동일하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고용직이나 별정직 등에 있어서는 채용이 허용된 경우가 없지 아니하고, 독립적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고용한 자의 책임규정, 예컨대 민법상의 사용자의 배상책임(제756조)이나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관한 규정(제391)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을 요약하면, 행위무능력자를 결격사유로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미성년자를 결격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나 예외없이 모든 미성년자를 결격사유로 하는 경우, 또는 「일정한 연령이하의 자」만을 결격사유로 하는 경우에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정치산자도 미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결격사유로 할 것인가 아닌가가 결정된 후,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일반’을 결격사유로 규정할 것인지 예외적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함께 둘 것인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자격상실 관련사항

파산자나 자격정지·자격상실의 경우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각종 자격의 취득이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특별히 규정할 필요는 없는 주의적 규정이다. 그러나, 정부기관이나 공공법인등에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의 경우에는 그 공익성과 윤리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파산선고는 경제적 활동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파산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규정해야 할 결격사유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중에 있는 자 또는 일정한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중인 자」, 「선고유예중인 자」, 「행정처분을 받은 자」, 「징계처분등에 의하여 파면·해임된 자」, 「외국인」 등의 결격사유는 특별한 제한에 해당하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형의 선고와 관련된 3종의 결격사유, 즉 「실형의 집행중인 경우」, 「집행유예중인 경우」 및 「선고유예중인 경우」는 그 제한의 정도가 다르므로 법률관계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하여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선고유예기간중인 자」를 결격사유로 하는 경우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선고유예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형의 선고 자체가 면제된다는 점에서 刑의 선고 자체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반대로 선고유예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刑의 선고가 있게 되고, 이 경우에는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선고유예기간중인 자」를 결격사유로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거나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되므로 가능한 한 지양되어야 한다. 오히려 ‘사후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 처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행정처분을 받은 자」, 「징계처분 등에 의하여 파면·해임된 자」를 결격사유로 하는 것은 당해 법률에 의한 처분 또는 당해 법률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법령에 의한 처분으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본다. 당해 자격이나 업무 또는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정처분이나 다른 법인 등의 기관에서의 징계처분을 일반적인 결격사유로 확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동일한 법률관계에서의 처분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인」 등 국적관련 사항을 결격사유로 하거나 「주소」등을 결격사유로 하는 경우는 「상호주의」에 따라 결격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私權의 취득에 관해서는 내외국인 평등주의가 원칙이다. WTO체제하에서 시장개방의 확대로 각종 자격취득이나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에 있다.

제 2 절 결격사유의 규정방식 유형

1. 규정방식 일반

(1) 결격사유의 표현방식

결격사유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하여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은 구체적인 기준을 입법례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이에 따라 개별 결격사유에 관한 법령을 정비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며,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는 아직 정비되지 아니한 법령이 더 많이 존재한다. 「법령입안 심사기준」에서 제시한 규정 방식¹⁰⁾을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0) 법제처, 전거 「법령입안 심사기준」 147면 및 148면 참조.

① 자격이나 신분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가) 될 수 없다

② 인·허가 등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방식

- i) 인허가처분(자격부여)의 요건임과 동시에 영업(자격향유)의 계속을 요건으로 나타내는 방식¹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을 영위할 수 없다

- ii) 인·허가의 처분요건으로 나타내는 방식¹²⁾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의 허가(인가)를 받을 수 없다. (A)

-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업의 허가(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할 수 없다). (B)

11) 이 방식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러한 유형의 규정형식은 조문의 文理的 표현을 보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인·허가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허가를 받은 후 결격사유가 생기면 당연히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위 조문에 의하면 인·허가후에 결격사유가 생긴 경우 인·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인지, 결격사유가 계속되는 동안 인·허가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사후에 결격사유가 생기는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상실시키는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하여 관련되는 별도 규정이 필요함을 예정하고 있다: 법제처, 전계 법령입안심사기준, 148면.

12) 위의 기준은 “인·허가 처분시의 판단기준에 관한 것일 뿐 일단 인·허가처분이 있는 후 결격사유가 생기더라도 인·허가의 효력과는 무관하게 되므로 결격사유가 생기는 경우 당해 영업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잃게 하는 규정을 두게 된다. 이렇게 되면, A형이나 B형이 입법형식의 내용에 다를 바가 없게 되므로 표현의 통일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①(A)의 방식으로 규정하기로 한다”고 하였다: 전계 법령입안심사기준, 148면.

(2) 현행법령상 규정례와 정비방향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불구하고, 그 이전에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상의 결격사유는 아직 이에 따라 정비되고 있지는 아니하다. 조문제목도 통일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요약컨대, 법제처가 법령입안심사 과정을 통하여 위의 기준에 따라 향후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이 통일적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결격사유 규정례를 고찰한 부분에 있어서는 규정방식의 통일보다는 이러한 모델 입법방식에 비추어 현행 법령상의 결격사유 관련 규정의 현황을 정리, 유형화함으로써 향후 정리되어야 할 대상법령 및 규정을 살피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2. 개별사유별 규정방식 유형

(1) 행위능력 관련 사유 유형

1) 규정 유형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이다. 파산자는 대리권이나 기타 결격사유로 될 뿐이며, 행위무능력제도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그러나, 결격사유과 관련한 개별 법령에서는 파산자를 행위무능력과 함께 규정하고 있는 예가 적지 않기 때문에 분석의 편의상 함께 다루고자 한다.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및 파산자를 동일한 결격사유로 하여 포함시키고 있는지 여부와 규정표현 방법상 각호로 구분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규정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각호 구분 여부

- i) 각호로 구분하는 유형: 이는 미성년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파산자를 각각의 호로 나누어 규정하는 유형이며, 국가공무원법이 대표적인 예이다.
- ii) 1개 호로 규정하는 유형: 이는 신탁법과 같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자’로 함께 규정하는 유형이다.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결격사유로 하지 않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자’만을 결격사유로 하면서 1개의 항 또는 호로 규정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 iii) 행위무능력자와 파산자로 나누어 규정하는 유형: 행위무능력자(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하나의 호로 하고, 파산자는 다시 이와 구분하여 별개의 호로 규정하는 유형이다. 은행법(제 18조제1항)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② 일부 제외 여부

- i) 미성년자를 제외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처럼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함으로써 결격사유에 미성년자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유형이다.
- ii) 미성년자, 한정치산자를 제외하는 경우: 민법 제127조의 법정대리권 소멸사유나 식품위생법의 경우처럼 결격사유로 ‘금치산자와 파산자만을 두고 있는 유형이다.

2) 개별 사유 규정방식의 유형

① 미성년자

미성년자 전부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난구호법시행령(§29. 1호)에서는 수난구호업무 종사 제외자를 14세미

만인 자로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연령의 미성년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입법례가 있다. 반면에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연령 이하의 성년자, 예컨대, 운항관리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27세미만인 자(여객선운항관리규칙§4②)를 제한하는 예도 있다.

연령에 따른 결격사유는 입법목적과 적용되는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따라 위와 같은 예외적 규정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한편, 보험업법 제84제2항은 보험설계사의 등록의 결격사유로서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두고 있다.

민법총칙은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가 그 영업에 관하여 행하는 행위(제8조)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따라서 위의 i)의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한편, 이 허락에 대하여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아니하며, 허락이 있었다는 입증책임은 영업허락이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상대방 등)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정대리인이 금치산자, 파산자로 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권이 소멸하므로 당연히 미성년자에 대하여营业을 허락할 수 없게 된다. 반면에 일단 영업의 허락을 한 후에는 그러한 사정이 있게 되더라도 그 허락의 효력은 유효하다.

상법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가 그 사원자격에 기하여 하는 행위’(동법 제7조)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점에서 볼 때, 법정대리인에게 보험모집인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라도 보험설계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보험업법의 규정은 대리제도의 법리에 어긋나거나 지나친 규제에 해당한다.

② 금치산자

대부분 「금치산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법령에서는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로 규정하는 예(공직선거법)와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는 예도 있다.

③ 파산자

관련 법령의 규정 유형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i)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ii)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iii)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iv)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v)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vi)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때
- vii) 파산자로서 복권에 이르지 못한 자
- viii) 파산한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ix) 파산자
- x) 파산선고를 받은 때

생각건대, ‘파산자’란 파산선고를 받은 자이며, ‘복권된 경우에는 파산자이었던 자’이다. 따라서 금치산자등의 경우와 같이 「파산자」로 규정하거나, 명확한 해석을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제1항 제2호의 규정례와 같이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자」로 통일하는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3) 유사 행위무능력 관련 사유의 유형

위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신장애와 관련된 사유」와 「약물·질병·신체장애 관련 사유」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규정례도 적지 않다.

① 정신장애 관련 사유

여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 i) 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
- ii) 정신질환자·정신지체자(인)
- iii) 노약자
- iv) 정신병자
- v) 간질병자

이 중 정신질환자와 정신병자 및 간질병자는 동일한 범주에 드는 것이지만, 반드시 의미 내용이 동일하지는 않다. 개별법의 성격상 의료·위생관련 법률에서는 疾患을 분류개념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민법상의 심신상실의 개념과 의학적인 개념의 병자(환자) 개념을 병용하는 경우도 있다.

② 약물·질병·신체장애 관련 사유

여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의 규정형식은 다음과 같다.

- i)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약물중독자에 관하여는 a)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료법, 약사법), b) 마약·대마 기타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수의사법, 장애인복지법), c) 마약중독자, d) 마약이나 그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화장품법), e) 마약 기타 약물중독자(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f) 마약류중독자(축산법)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 ii) 알콜의 중독자: 가장 넓은 범위의 心神障礙者를 규정하는 예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를 모두 결격사유로 하는 경우이다.
- iii) 부상·질병 또는 신체장애등으로 신체활동에 장애가 있는 자: 이는 「수난구호법시행령」에 규정되고 있는 사항으로 동법령상의 수난구호업무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 iv)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병환자: 공중위생관리 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경우로 보여진다.

(2) 형사처벌 관련 사유의 유형

1) 유형의 정리

일정한 前科事實이 있는 자를 결격사유로 하는 경우로서, 현행법령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①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 받은 경우

이 경우에도 刑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할 것을 요하는 ‘경과기간’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다.

- i) 경과기간이 5년인 경우
- ii) 경과기간이 3년인 경우
- iii) 경과기간이 2년인 경우
- iv) 경과기간이 1년인 경우
- v) 경과기간을 두지 않은 경우

한편, 당해 인·허가나 자격향유와 관련이 없는 다른 법령위반으로 인한 전과사실도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도 구분되며, 다른 법령 위반사실을 결격사유로 하는 경우에 당해 법령위반의 경우보다 제한을 가볍게 하고 있는 경우와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은 입법시 유의사항으로,

- i) 과잉규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ii) 다른 법령위반으로 인한 전과사실은 가급적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볍게 하도록 할 것,

iii) 벌금형을 결격사유로 하는 경우는 신중을 기하되, 다른 법령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의 경우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할 것 등을 들고 있다.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비추어 규정례를 살펴보면, 법령의 구분없이 일정한 전과사실을 결격사유로 하는 규정례 중에는 당해 영업 또는 자격의享有가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예도 적지 않다. 이는 대부분 당해 법령의 실효성 확보와도 무관한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

②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경우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를 결격사유로 하는 경우도 다시 일정한 경과규정을 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가 있다.

법령입안심사기준은 ‘집행유예를 결격사유로 함에 있어서는 형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유예기간 만료후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까지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억제하도록 한다」고 입법시 유의사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상당한 수의 법령에서는 경과기간의 결격사유규정을 두고 있다.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i) 2년이 경과하여야 하는 경우, ii) 1년이 경과하여야 하는 경우, 및 iii) 경과기간을 두지 않은 경우 등으로 나뉜다. 현행 규정례의 분석에 의하면, 경과기간을 두지 않은 경우와 둔 경우가 거의 비슷한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③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법령입안심사기준은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고도의 윤리성을 요하는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결격사유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고,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형법의 취지를 존중

하여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만을 결격사유로 한다」고 유의사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를 결격사유로 하고 있는 규정례는 도로교통법을 비롯한 27개 법령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형별로는 i)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ii)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iii)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로 구분된다.

집행유예의 경우와는 달리 경과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예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2) 각 사유별 규정방식의 정비

① 刑의 선고를 받은 경우

개별 법령상의 규정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 ‘형의 선고를 받고’

- 형의 선고를 받고(주택법)
- 刑을 받고(국가공무원법)
- 실형을 받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형을 선고받고(공증인법)
- 실형의 선고를 받고(은행법)

ii)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은행법)
-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국가공무원법)
- 그 집행이 끝나거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 그 집행이 끝났거나(도로교통법)
- 집행이 종료되거나(「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의료법)
-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사회복지사업법)
- 그 집행중(귀속재산처리법)
- 그 형기중에 있는(민법제937조)
- iii)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국가공무원법)
 -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소방법)
 -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국민연금법)
 -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은행법)
 -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교통안전법)
- iv)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환경분쟁조정법)
 -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국가공무원법, 은행법,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경비업법)
 -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료법)

생각건대, ‘형의 선고’와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문제와, 벌금형의 집행시점이 벌금납부시점에 따라 유동적인 점 및 벌금에는 실형 개념이 없다는 점에서 ‘형의 선고’는 「實刑의 선고」로 통일하는 문제 및 법령문을 가능한 한 간략하게 규정하는 문제 등이 있다.

②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경우

개별 법령상의 규정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i)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국가공무원법)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상호저축은행법)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공증인법)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전자서명법)
-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농업협동조합법)

- ii)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공인노무사법)
 -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세무사법)
 -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후(법무사법)
 -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공증인법)
 -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 그 집행유예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군인사법)

- iii)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전자서명법)
 -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소방법)
 -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청소년기본법)
 -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공인회계사법)
 -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수산업협동조합)

iv)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형의 선고의 경우와 동일함

v) 정 리

개별법령의 규정형식이 위에서 보듯이 전혀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별한 법적 의미가 부여될 성격이 아니므로 하나의 통일된 규정형식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 등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만 결격사유로 하고 있다. 이는 집행유예의 성격상 타당하다.

③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이 결격사유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변호사법등)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경찰공무원법, 군인사법) 및 ‘刑’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규정례가 나뉜다.

규정형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변호사법, 수산업협동조합법)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국가공무원법)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ii)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변호사법)
-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수산업협동조합법)
-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공증인법)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경찰공무원법)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로교통법)

iii) 정 리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여부는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집행유예와 형의 선고를 내릴 수 없게 되는 선고유예는 구분되어야 하며, 그 유예의 요건 또한 다르다는 점에서 일단 형의 선고가 있는 집행유예의 경우와 선고가 유예된 선고유예의 경우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고 본다. 선고유예중에 있는 자를 결격사유로 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농업협동조합법(§49), 건축사법(§9)은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동안만 결격으로 하고 있고, 선고유예는 결격사유로 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그 법률관계의 취소·소멸사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자격상실 관련 사유의 정비

1) 규정형식의 유형

‘판결이나 법률에 의한 자격의 상실 또는 정지’를 결격사유로 하는 규정례는 다음과 같이 유형별로 나눌 수가 있다.

- i)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국가공무원법)
- ii)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iii)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군인사법)
- iv)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비송사건절차법)
- v) 공민권을 박탈당한 자(귀속재산처리법)
- vi)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비송사건절차법)
- vii)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2) 입법형식의 통일 문제

자격상실 등을 결격사유로 하는 경우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원의 판결 즉,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가 해당된다.

법원에 의하여 자격형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격정지 내지 자격상실에 해당하므로 결격사유로 함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특정한 자격이나 지위 또는 권한의 정지 내지 자격무효확인 등의 결

정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일반화하여 결격사유로 원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마찬가지로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되는 경우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당해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되는 경우는 결격사유나 인·허가, 면허등의 취소사유나 임원·위원등의 자격상실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따라서 문제되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도 당해 법률상의 결격사유로 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개별 법률에서의 자격상실규정은 그 법률상의 의무위반등에 의하여 의결이나 처분에 의하여 자격을 박탈 내지 정지하는 것이므로 다른 법률관계에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에 해당한다.

(4) 행정처분 관련 사유의 유형

1) 규정의 유형

일정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하는 경우는 다시 i)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에 따른 유형과, ii) 경과기간에 따른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

① 처분근거별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에 따라 구분하면, i) 당해법령에 의한 처분, ii) 당해 법령과 관련법령에 의한 처분, iii) 관련법령에 의한 처분, iv) 근거법령의 명시없이 해당 면허등이나 자격의 취소처분 등으로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다.

② 경과기간별

행정처분(취소, 말소등)이 행하여진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확장하여 규정하는 규정례가 일반적인 바, 이

를 그 경과기간별로 나누면, i) 경과기간이 5년인 경우, ii) 경과기간이 4년인 경우, iii) 경과기간이 3년인 경우, iv) 경과기간이 2년인 경우, v) 경과기간이 1년인 경우 및 vi) 경과기간을 두지 않는 경우로 된다.

이하의 규정례에서 보듯이 영업의 제한정도 즉, 특허,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신고의 구분과 경과기간의 長短이 대응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2) 규정방식의 유형

① 행정처분의 근거 관련사항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에 따라 규정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관세법)
-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취소)처분을 받은 (경비업법)
- 이 법, ○○관련법령 또는 외국○○관련법령에 따라.....취소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 법·○○법·○○법 또는 ○○법에 의하여취소된(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법)
- ○○○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은행법)
- ○○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약사법)
- ○○사업(·○○사업 또는 ○○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항공법)
- 이 법에 의한 ○○사업의 등록이 취소.....(자동차관리법)
- 제○○조제○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조제○호·제○호에 해당하는 사유로말소(건설산업기본법)
- 제○○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주택법)

-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방송법) 위의 다양한 규정방식은 a) 당해법령에 의한 처분, b) 당해 법령과 관련법령에 의한 처분, c) 관련법령에 의한 처분, d) 근거법령의 명시 없이 해당 면허등이나 자격의 취소처분으로 다시 유형화할 수 있다. 정비할 경우 이 4가지 유형에 따라 방안을 마련하면 좋을 것이다.

② 경과기간 관련사항

경과기간이 a) 4년인 경우 및 b) 기타의 경우(5년, 3년, 2년, 1년, 6월), 경과기간이 없는 경우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 i) 경과기간이 5년인 경우: 허가·인가·등록의 취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처벌(주세법), 등록 취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록 말소(건설산업기본법), 당선 무효(농업협동조합법), 허가나 등록의 취소(직업안정법)
- ii) 경과기간이 4년인 경우: 당선 무효·취소(수산업협동조합법)
- iii) 경과기간이 3년인 경우: 등록의 취소·사업의 폐지명령(전기통신사업법), 자격취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평생교육법), 자격 공인 취소(자격기본법)
- iv) 경과기간이 2년인 경우: 적기시정조치등(보험업법), 적기시정조치·계약이전결정 등 행정처분(은행법), 임원 취임승인 취소(「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면허 취소(건축사법, 주세법), 허가 취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영업소폐쇄(「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사업계획의 승인취소(관광진흥법), 허가 취소(원자력안전법), 등록 취소(교통안전법), 등록·자격의 취소(「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v) 경과기간이 1년인 경우: 폐쇄명령(공중위생관리법),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먹는물관리법), 등록 말소(「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면허의 취소처분(식품위생법)

협동조합 중 같은 결격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농업협동조합이나 산림조합의 경우에는 경과기간이 5년인 반면에, 수산업협동조합은 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일하게 5년으로 함이 바람직하다.

기타의 경우(경과기간이 5년, 3년, 2년, 1년인 경우)에는 영업등의 제한정도로서의 면허, 허가, 등록, 지정을 요하는 종류에 따른 구분이나 자격간의 경과기간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개별법의 입법목적에 따른 입법재량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 금지의 해제로서의 허가와, 일정한 기준에 의한 원칙적 허용으로서의 인가나 등록 등을 동일한 경과기간을 두어 결격사유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제한의 정도에 따라 경과기간의 長短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징계처분 관련 규정의 유형

일정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하는 경우는 다시 i) 징계처분의 근거법령에 따른 유형과, ii) 경과기간에 따른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

① 처분근거별

징계처분의 근거법령에 따라 구분하면, i) 당해법령에 의한 처분, ii) 당해 법령과 관련법령에 의한 처분, iii) 법령 일반에 의한 처분, iv) 근거법령의 명시없이 해당 신분이나 자격소지자에 대한 처분, v) 근거법령의 명시없이 처분의 종류만 규정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다.

② 경과기간별

행정처분(취소, 말소등)이 행하여진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확장하여 규정하는 규정례가 일반적인 바, 이

를 그 경과기간별로 나누면, i) 경과기간이 5년인 경우, ii) 경과기간이 4년인 경우, iii) 경과기간이 3년인 경우, iv) 경과기간이 2년인 경우, v) 경과기간이 1년인 경우로 된다.

(6) 국적 관련 사유의 유형

규정형식의 문제 외에는 다른 문제는 없다고 할 수가 있다. 대부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관련 법령에서 외국인등을 결격사유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정형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지방공기업법§60①1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경찰공무원법)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①)
-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방송문화진흥회법§8)
- 외국법인의 임원

이상의 규정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이중국적자를 한시적으로나마 결격사유에서 제한하게 된다는 점에서 적당하지 않다고 본다. 외국인 일반이 아니고 특정한 단체등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현재의 규정례처럼 「외국법인의 임원」등으로 규정하면 될 것이다.

종전 「원자력법」은 국적조항을 두었으나, 현행 「원자력진흥법」(§6) 및 원자력안전법(§14)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준용하거나 국적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제 3 장 관련 법률관계의 유형

제 1 절 분류기준

각종 법령상의 결격사유 관련 법률관계는 그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유형화할 수가 있다. i) 일정한 신분에 관한 결격사유, 자격 취득에 관한 결격사유 및 영업인·허가에 관한 결격사유로 나누는 방법¹³⁾, ii) 광의의 공무원과 특수법인의 임원이나 직원에 대한 규정,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 인·허가사업의 사업자에 대한 규정으로 나누는 방법¹⁴⁾등이 있다.

전자의 분류방법에 의하면, ① 일정한 신분에 관한 결격사유는 다시 공무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 위원의 결격사유, 피선거권, 친족·상속관계에 있어서의 결격사유로 구분되고, ② 자격취득에 관한 결격사유는, 자유업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자격과 취업요건으로서의 자격으로 나누고 있다. ③ 영업 인·허가에 관한 결격사유는, 인·허가의 실효사유, 인·허가의 당연취소사유, 인·허가의 임의취소사유, 결격사유발생의 효과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로 세분하며, ④ 기타의 경우로 규정이 불완전한 경우(결격사유의 효과규정 미비)로 구분된다.

이 연구에서는 결격사유를 두고 있는 법률관계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고자 한다. 동일한 법률관계는 그 결격사유를 두어 제한하고자 하는 이유나 근거가 동일·유사하며, 따라서 그 제한의 정도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세부적이 분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의 i)의 분류방법을 함께 적용하고자 한다.

결격사유를 두고 있는 현행법령상의 법률관계는 i) 고용관계, ii) 위원등의 위촉·임명관계, iii) 공직자등의 임용관계, iv) 법인 임원의

13) 정태용, 전계논문, 148면 이하.

14) 김성호, 전계논문, 216면.

임용관계, v) 수임인의 임용관계, vi) 전문자격 등의 취득관계, vii) 영업의 인·허가관계, viii) 기타 공권등의 제한관계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법인의 임원은 다시 조합임원과 공단임원 및 일반 법인의 대표의 임용관계로 나눌 수가 있고, 영업의 인·허가관계는 영업의 면허관계, 허가관계, 등록관계등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법률관계의 유형에 따라 그 결격사유를 두고 있는 현행 규정례를 분석하고, 각 법률관계에서의 결격사유 종류를 정리하고자 한다.

제 2 절 법률관계별 유형

1. 고용관계

< 관련법률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신용조회업종사자) ①항; (2) 전파법 제71조 (무선종사자의 배치) 등

< 표 > 고용관계의 결격사유 규정례

결격사유	관련법령
1. 한정자산등	-
2. 파산자	전파법
3. 금고이상	-
4. 집행유예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5. 선고유예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전파법
6. 자격상실	상 동
7. 파면처분	상 동
8. 해임처분	상 동

결격사유	관련법령
· 미성년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국적관련	-
· 기 타	-

※ 참 고 :

- 위 표의 결격사유 중 1.~8.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를 약칭한 것임.
- 1.~8.의 우측 ‘관련법령’란은 해당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령을 기술.
- ‘미성년자, 국적관련, 기타’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두고 있는 법령을 기술.

위 표에서 보듯이, 신용조회업종사자의 결격사유로 ‘실형의 선고 및 집행유예중인 자’에 대한 규정이 없고, 무선종사자의 배치 관련 결격사유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와 형의 선고와 관련하여 「형법」 중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 중 이적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그 밖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2개 법률 모두 두고 있지 않다.

2. 위원 등의 임용관계

< 관련법률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52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항; 고용보험법 제99조 (고용보험심사위원회) ④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6조 (퇴직등) ①항;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사회복지위원회) ③항; 상공회의소법 제23조 (의원 등의 자격제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15조의2 (협회·조합임원의 자격요건);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제13조 (위원의 결격사유등) ①항; 조정위원규칙 제3조 (결격사유);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항; 환경분쟁조정법 제9조 (결격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6조 (관리위원회의 구성등)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55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 표 > 위원 등의 임용관계의 결격사유 규정례

결격사유	관련법령
1. 한정치산등	
2. 파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조정위원회규칙
3. 금고이상	
4. 집행유예	고용보험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조정위원규칙, 토지수용법
5. 선고유예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고용보험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사회복지사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공회의소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조정위원규칙, 토지수용법, 환경분쟁조정법
6. 자격상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고용보험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공회의소법,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조정위원규칙
7. 파면처분	
8. 해임처분	고용보험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공회의소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조정위원회규칙, 환경분쟁조정법, 회사정리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 미성년자	사회복지사업법,(상공회의소법: 25세이하)

결격사유	관련법령
· 국적관련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 기 타	고용보험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공회의소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조정위원규칙, 토지수용법, 환경분쟁조정법, 회사정리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 참 고 :

- 위 표의 결격사유 중 1.~8.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를 약칭한 것임.
- 1.~8.의 우측 ‘관련법령’란은 해당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령을 기술.
- ‘미성년자, 국적관련, 기타’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두고 있는 법령을 기술.

위 표에서 보듯이, 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결격사유에 대하여 14개 법령의 규정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성년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예는 사회복지사업법뿐이며, 상공회의소법의 경우에는 25세이하를 결격사유로 두고 있다. 반면에 파산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예도 있는 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과 조정위원회규칙에 이에 해당한다.

3. 공직자 등의 임용관계

< 관련법률 >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①항; (2) 경찰공무원법 제7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②항; (3) 국가정보원직원법 제8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②항; (4) 대통령경호실법 (직원) 제5조 ②항; (5) 군인사법 (결격사유등) 제10조 ②항; (6)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7)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0조 (지휘관의 임명등) 등 7개 법률

< 표 > 공직자 등의 임용관계의 결격사유 규정례

결격사유	관련법령
1. 한정치산등	-
2. 파산자	-
3. 금고이상	경찰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대통령경호실법
4. 집행유예	경찰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대통령경호실법
5. 선고유예	-
6. 자격상실	대통령경호실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7. 파면처분	-
8. 해임처분	대통령경호실법
· 미성년자	
· 국적관련	경찰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군인사법, 대통령경호실법
· 기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 참고 :

- 위 표의 결격사유 중 1.~8.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를 약칭한 것임.
- 1.~8.의 우측 ‘관련법령’란은 해당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령을 기술.
- ‘미성년자, 국적관련, 기타’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두고 있는 법령을 기술.

4. 조합임원의 임용관계

< 관련법률 >

- (1)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항; (2) 농업기반공사법 제33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항; (3) 도시재개발법 제17조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①항; (4)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0조 (임원의 결격

사유) ①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0조; (5)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1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항; (6)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임원등의 자격제한) ①항; (7) 영업조합법 제24조 (임원자격의 제한) ①항; (8) 영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0조 (임원의 결격사유); (9) 산림조합법 제39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항; (10)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항; (1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항 등

< 표 > 조합임원의 선임관계의 결격사유 규정례

결격사유	관련법령
1. 한정치산등	
2. 파산자	
3. 금고이상	
4. 집행유예	영업조합법, 영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5. 선고유예	도시재개발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영업조합법, 영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6. 자격상실	도시재개발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영업조합법
7. 파면처분	도시재개발법, 영업조합법, 영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8. 해임처분	도시재개발법, 영업조합법, 영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미성년자	농업협동조합법, 농지개량조합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영업조합법, 임업협동조합법, 도시재개발법
· 국적관련	농업협동조합법, 농지개량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영업조합법, 임업협동조합법

결 격 사 유	관 련 법 령
· 기 타	수산업협동조합법, 염업조합,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법, 도시 재개발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 동조합

※ 참 고 :

- 위 표의 결격사유 중 1.~8.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를 약칭한 것임.
- 1.~8.의 우측 ‘관련법령’란은 해당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령을 기술.
- ‘미성년자, 국적관련, 기타’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두고 있는 법령을 기술.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징계처분, 벌금형, 당선무효 등을 특별한 결격 사유로 하고 있다. 반면에 동일한 특수법인인 한국해운조합법은 임원 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5. 공단임원의 임용관계

< 관련법률 >

(1) 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 (임원 결격사유); (2) 국민연금법 제35조 (임원의 결격사유); (3) 정부법무공단법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4조 (「민법」의 준용); (5)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4조 (임원의 결격사유); (6) 자연공원법 제69조(다른 법률 의 준용); (7)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8) 한국공항공사법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9) 한국국제협력단법 제9 조 (임원의 결격사유);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1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12) 항만공사법 제13조 (결격사유); (13) 한국환경공단법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 표 > 공단임원의 임용관계의 결격사유 규정례

결격사유	관련법령
1. 한정치산등	-
2. 파산자	-
3. 금고이상	-
4. 집행유예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자연공원법,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한국공항공사법, 한국국제협력단법, 한국환경공단법
5. 선고유예	교통안전공단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자연공원법, 정부법무공단법,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한국공항공사법, 한국국제협력단법, 한국보훈복지공단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한국환경공단법
6. 자격상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7. 파면처분	교통안전공단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자연공원법, 정부법무공단법,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한국공항공사법, 한국국제협력단법, 한국보훈복지공단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한국환경공단법
8. 해임처분	상 동
· 미성년자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한국국제협력단법
· 국적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한국보훈복지공단법, 한국국제협력단법, 한국공항공사법,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자연공원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기 타	자연공원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참 고 :

- 위 표의 결격사유 중 1.~8.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를 약칭한 것임.
- 1.~8.의 우측 ‘관련법령’란은 해당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령을 기술.
- ‘미성년자, 국적관련, 기타’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두고 있는 법령을 기술.

6. 법인대표 등의 임용관계

< 관련법률 >

(1) 경비업법 제5조 (임원의 결격사유);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임원등); (3)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18조 (임원의 결격사유); (4) 방송문화진흥회법 제8조 (임원의 결격사유); (5) 보험업법 제12조 (임원의 자격) ②항; (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7)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 (청산인의 결격사유); (8) 민법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9) 민법 제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 (10)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의2 (임원의 결격사유); (11) 새마을금고법 제20조 (임원의 자격제한) ①항 ;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 (임원의 자격); (13) 은행법 제18조 (임원의 자격요건 등) ①항 ; (14) 재외동포재단법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 (15) 전기통신사업법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 (16)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결격사유등) ①항; (17) 정신보건법 제21조 (보호의무자) ①항; (18) 방송법 제13조 (결격사유) ②항; (19)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8조 (임원의 자격) ①항; (20)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81조 (감독이사의 결격사유) ②항; (21)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임원의 결격사유); (22)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8조 (임원의 결격사유); (23)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 (24) 한국환경공단법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등

< 표 > 법인대표 등의 임용관계의 결격사유 규정례

결격사유	관련법령
1. 한정치산등	민법 제127조
2. 파산자	-
3. 금고이상	비송사건절차법, 민법제127조, 전기통신사업법
4. 집행유예	경비업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비송사건절차법, 민법제127조, 민법제937조, 재외동포재단법, 전기통신사업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방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5. 선고유예	경비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보험업법, 비송사건절차법, 민법제127조, 민법제93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은행법, 재외동포재단법, 전기통신사업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방송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지방공기업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6. 자격상실	경비업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보험업법, 민법제127조, 민법제93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은행법, 전기통신사업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방송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지방공기업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7. 파면처분	경비업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보험업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민법

제 3 장 관련 법률관계의 유형

결 격 사 유	관 련 법 령
	제127조, 민법제937조, 상호저축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은행법, 재외동포재단법, 전기통신사업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방송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지방공기업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8. 해임처분	경비업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민법제127조, 민법제937조, 재외동포재단법, 전기통신사업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방송법, 지방공기업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9. 허가취소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비송사건절차법, 민법제127조, 민법제937조, 새마을금고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재단법, 정신보건법, 방송법, 지방공기업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 미성년자	경비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부동산중개업법, 새마을금고법, 재외동포재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민법제937조, 비송사건절차법, 정신보건법, 상호저축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은행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 국적관련	지방공기업법, 새마을금고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재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결 격 사 유	관 련 법 령
· 별 금	지방공기업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은행법, 보험업법

※ 참 고 :

- 위 표의 결격사유 중 1.~8.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를 약칭한 것임.
- 1.~8.의 우측 ‘관련법령’란은 해당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령을 기술.
- ‘미성년자, 국적관련, 기타’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두고 있는 법령을 기술.

특수한 결격사유 규정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민법제937조, 정신보건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종합유선방송법, 민법제127조, 비송사건절차법

7. 수입인의 임용관계

< 관련법률 >

(1) 공사채등록법시행령 제32조 (수탁자의 임무종료에 의한 공사채의 이전등록); (2) 광업등록령 제75조 (수탁자의 임무종료); (3) 민법 제 690조 (사망, 파산등과 위임의 종료); (4) 부동산등기법 제122조 (동전); (5) 신탁법 제10조 (수탁능력); 제12조(수탁자의 임무종료) (6) 어업등록령 제64조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하였을 때의 권리이전등록의 신청인); (7) 종자산업법제53조의규정에의한품종보호등록에관한규칙 제

59조 (수탁자의 임무종료로 인한 이전등록신청); (8)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56조 (수탁자의 임무종료로 인한 이전등록신청절차) 등

< 표 > 수임인의 임용관계의 결격사유 규정례

결격사유	관련법령
1. 한정치산등	민법제690조
2. 파산자	민법제690조
3. 금고이상	공사채등록법시행령, 광업등록령, 민법제690조,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어업등록령, 종자산업법, 「특허권등의 등록령」
4. 집행유예	공사채등록법시행령, 광업등록령, 민법제690조,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어업등록령, 종자산업법, 「특허권등의 등록령」
5. 선고유예	공사채등록법시행령, 광업등록령, 민법제690조,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어업등록령, 종자산업법, 특허등록령
6. 자격상실	공사채등록법시행령, 광업등록령, 민법제690조,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어업등록령, 종자산업법, 「특허권등의 등록령」
7. 파면처분	공사채등록법시행령, 광업등록령, 민법제690조,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어업등록령, 종자산업법, 「특허권등의 등록령」
8. 해임처분	공사채등록법시행령, 광업등록령, 민법제690조,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어업등록령, 종자산업법, 「특허권등의 등록령」
· 미성년자	신탁법
· 국적관련	
· 기타	

※ 참고 :

- 위 표의 결격사유 중 1.~8.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를 약칭한 것임.
- 1.~8.의 우측 ‘관련법령’란은 해당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령을 기술.
- ‘미성년자, 국적관련, 기타’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두고 있는 법령을 기술.

8. 전문자격·국가자격 등의 취득관계

< 관련법률 >

(1)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3 (감리원의 결격사유); (2) (4) 공인노무사법 제4조 (결격사유); (5) 공인회계사법 제4조 (결격사유); (6)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등) ①항; (7) 관세사법 제5조 (결격사유); (8) 교통안전법 제7조의2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 ③항; (9)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9조 (결격사유); (10) 농어촌정비법 제29조 (환지사의 결격사유); (11) 도선법 제6조 (결격사유); (12)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3 (결격사유); (13) 법무사법 제6조 (결격사유); (14) 변리사법 제4조 (결격사유); (15) 변호사법 제5조 (변호사의 결격사유); (16)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17) 세무사법 제4조 (세무사의 결격사유); (18)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리사의 결격사유); (19) 수의사법 제5조 (결격사유); (20) 해운법시행규칙 제15조의6 (운항관리자의 자격) ②항; (21)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6조 (결격사유); (22)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 등) ①항; (23) 자격기본법 제18조 (결격사유); (24) 장애인복지법 제74조 (응시자격의 제한 등) ①항; (25) 정신보건법 제7조의2 (결격사유); (2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결격사유); (27) 주택법 제56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④항; (2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지도사의 자격요건 등) ②항; (2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 (결격사유); (30)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청소년지도사) ②항; (31) 축산법 제12조 (수정사의 면허) ②항; (3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5조의2 (주민감시요원의 자격); (33)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10조 (결격사유); (34) 행정사법 제7조 (결격사유) 등

< 표 > 전문자격·국가자격 등의 취득관계의 결격사유 규정례

결격사유	관련법령
1. 한정치산등	
2. 파산자	공중위생관리법, 축산법
3. 징역이상	관세사법, 도선법, 문화재보호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금고이상	공중위생관리법, 관세사법, 농어촌정비법, 도선법, 문화재보호법, 수의사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집행유예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도선법, 사회복지사업법, 수의사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법, 축산법, 행정사법
6. 선고유예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법무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7. 자격상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기본법,
8. 파면처분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행정사법
9. 해임처분	
· 미성년자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교통안전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농어촌정비법, 문화재보호법, 변리사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자격기본법, 주택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기본법, 해운법시행규칙,
· 국적관련	도선법

결 격 사 유	관 련 법 령
• 자격취소, 정지	교통안전법, 건설기술관리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자격기본법, 주택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영 업 정 지	건설기술관리법, 도선법, 해운법시행규칙, 도선법
• 기 타	자격기본법

※ 참 고 :

- 위 표의 결격사유 중 1.~8.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를 약칭한 것임.
- 1., 2., 5.의 우측 ‘관련법령’란은 해당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령을 기술.
- 3., 4., 6.이하의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두고 있는 법령을 기술.

9. 영업의 면허관계

< 관련법률 >

(1) 공증인법 제13조 (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2)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등) ②항; (3) 건축사법 제9조 (결격사유);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경매사의 임면) ②항; (5) 약사법 제5조 (결격사유);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결격사유); (7) 원자력안전법 제85조 (결격사유); (8)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6조 (결격사유) ①항; (9)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결격사유); (10) 주세법 제10조 (면허의 제한); (11) 항공법 제114조 (면허의 결격사유등); (12) 해운법 제8조 (결격사유) 등

< 표 > 영업의 면허관계의 결격사유 규정례

결격사유	관련법령
1. 한정치산등	-
2. 파산자	공중위생관리법, 원자력법
3. 금고이상	공중위생관리법, 약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 집행유예	공중위생관리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5. 선고유예	공중위생관리법, 건축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약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원자력안전법, 유선및도선사업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주세법, 항공법, 해운법
6. 자격상실	공중위생관리법, 건축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약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원자력안전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주세법, 항공법, 해운법
7. 파면처분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건축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약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원자력안전법, 유선및도선사업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주세법, 항공법, 해운법
8. 해임처분	상 동
9. 행정처분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 미성년자	건축사법, 약사법, 원자력안전법(18세미만), 유선및도선사업법, 주세법, 해운법
· 국적관련	
· 기타 (개별적인 규정례)	공중위생관리법, 약사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주세법

※ 참 고 :

- 위 표의 결격사유 중 1.~8.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를 약칭한 것임.
- 1.~8.의 우측 ‘관련법령’란은 해당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령을 기술.
- ‘미성년자, 국적관련, 기타’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두고 있는 법령을 기술.

10. 영업의 허가관계

< 관련법률 >

(1)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제4조 (결격사유); (2) 농수산물 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 (중도매업의 허가) ③항;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마약류취급자의 허가등) ③항; (4) 도시가스사업법 제4조 (결격사유); (5) 먹는물관리법 제24조 (영업허가등의 제한) ①항; (6)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결격사유); (7) 射倖行爲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6조 (허가의 제한); (8) 궤도운송법 제6조(결격사유); (9) 식품위생법 제38조 (영업허가등의 제한) ①항; (1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결격사유); (11)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12) 원자력안전법 제14조 (결격사유); (13) 저작권법 제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등) ③항; (14) 전기사업법 제8조 (결격사유); (15) 직업안정법 제38조 (결격사유); (1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0조 (결격사유); (17)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5조 (제조업자의 결격사유); (18)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의 허가) ③항; (19)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 (허가의 결격사유); (20)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결격사유); (21) 「화학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결격사유) 등

< 표 > 영업의 허가관계의 결격사유 규정례

결격사유	관련법령
1. 한정자산등	-
2. 파산자	대마관리법
3. 징역이상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사격 및 사격장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등 규제및 처벌특례법」,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원자력안전법, 저작권법, 직업안정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4. 금고이상	먹는물관리법, 궤도운송법, 식품위생법, 저작권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폐기물관리법
5. 집행유예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먹는물관리법, 궤도운송법, 식품위생법,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원자력안전법, 저작권법, 축산물위생관리법
6. 선고유예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먹는물관리법, 「사격 및 사격장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궤도운송법, 식품위생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사업법」,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원자력안전법, 저작권법, 전기사업법, 직업안정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결격사유	관련법령
7. 자격상실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먹는물관리법, 「사격 및 사격장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射倖行爲등규제및처벌특례법, 궤도운송법, 식품위생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원자력안전법, 저작권법, 전기사업법, 직업안정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8. 파면처분	상 동
9. 해임처분	상 동
10. 행정처분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원자력안전법, 저작권법
· 미성년자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射倖行爲등규제및처벌특례법, 먹는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사격 및 사격장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 국적관련	
· 기 타	「사격 및 사격장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저작권법, 전기사업법,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참 고 :

- 위 표의 결격사유 중 1.~8.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를 약칭한 것임.
- 1.~8.의 우측 ‘관련법령’란은 해당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령을 기술.
- ‘미성년자, 국적관련, 기타’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두고 있는 법령을 기술.

< 개별적인 결격사유 규정례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저작권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사격 및 사격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궤도운송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원자력안전법, 전기사업법, 직업안정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 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먹는물관리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11. 영업의 등록관계

< 관련법률 >

(1) 골재채취법 제15조 (결격사유) ; (2) 관광진흥법 제7조 (결격사유) ①항; (3) 경륜·경정법 제7조 (선수·심판 및 용구의 등록등) ①항;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6조 (결격사유); (5) 관세법 제175조 (운영인의 결격사유);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등록사업의 등록 등) ③항; (7)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3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③항; (8) 농약관리법 제4조 (결격사유); (9) 대기환경보전법 제65조 (지정사업자의 결격사유); (10)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③항 ; (11) 먹는물관리법 제16조 (결격사유); (12) 보험업법 제84조 (보험설계사의 등록) ②항; (13)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4 (지도사의 등록) ③항; (14) 석탄산업법 제19조 (석탄가공업자의 결격사유) ; (1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 (탱크시험자의 등록등) ④항; (1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등록의 결격사유) ; (17) 소방시설공사업법 제5조 (결격사유); (18) 소음·진동관리법 제42조

(결격사유); (19) 수상레저안전법 제40조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 (2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3조 (결격사유) ; (2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 (결격사유) ; (2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2 (결격사유); (23) 방송법 제13조 (결격사유); (24) 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2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 (유독물영업자의 결격사유); (2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 (영업의 제한); (27) 전기공사업법 제5조 (결격사유) ; (28) 전력기술관리법 제15조 (등록의 결격사유); (29)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6조 (등록의 결격사유); (30) 주택법 제11조(등록업자의 결격사유) ; (31) 지하수법 제23조 (결격사유); (32) 평생교육법 제28조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②항; (33) 한국마사회법 제11조 (마주의 등록) ②항; (34)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6조 (결격사유) ; (35) 해양환경관리법 제71조 (결격사유); (36) 해양환경관리법 제87조 (결격사유) ; (37)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등록의 결격사유); (38) 화장품법 제3조 (제조판매업의 등록 등) ②항; (3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②항; (40) 환경영향평가법 제55조(결격사유) ; (41) 자동차관리법 제54조 (결격사유) ①항; (4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7조 (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4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결격사유); (4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결격사유등) ①항; (45) 해외이주법 제10조의2 (등록의 결격사유) ①항; (46) 전자서명법 제5조 (결격사유); (47)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 ①항; (48)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4조(결격사유); (49) 건설기술관리법 제29조 (감리전문회사의 결격사유); (50)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①항 등

< 표 > 영업의 등록관계의 결격사유 규정례

결격사유	관련법령
1. 한정치산등	-
2. 파산자	
3. 금고이상	해외이주법
4. 집행유예	골재채취법, 경륜·경정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한국마사회법,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화장품법,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환경영향평가법, 해외이주법
5. 선고유예	골재채취법, 관광진흥법, 기상법, 경륜·경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관세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약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먹는물관리법, 보험업법, 산업안전보건법, 석탄산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상레저안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방송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지하수법, 평생교육법, 한국마사회법,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해양환경관리법, 물류정책기본법, 화장품법,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환경영향평가법, 특허법, 자동차관리법,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해외이주법, 전자서명법,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6. 자격상실	골재채취법, 관광진흥법, 경륜·경정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소음·진동관리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마사회법,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해외이주법

결 격 사유	관 련 법 령
7. 파면처분	골재채취법, 관광진흥법, 기상법, 경륜·경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관세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약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먹는물관리법, 보험업법, 산업안전보건법, 석탄산업법, 「소방시설공사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상레저안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지하수법, 평생교육법, 한국마사회법,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해양환경관리법, 물류정책기본법, 화장품법,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환경영향평가법, 자동차관리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해외이주법, 전자서명법,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8. 해임처분	상 동
9. 행정처분	경륜·경정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먹는물관리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마사회법,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 미성년자	관세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산업안전보건법, 수상레저안전법, 방송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유통산업발전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국적관련	
· 기 타	농약관리법,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지하수법, 해양환경관리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기술개발

결 격 사유	관 련 법 령
	및지원에관한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해양환경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유통산업발전법, 관세법, 물류정책기본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보험업법, 석탄산업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소방법제18조, 소방법제34조, 소방법제54조, 소방법제65조의3, 평생교육법, 정보통신공사업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 참 고 :

- 위 표의 결격사유 중 1.~8.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를 약칭한 것임.
- 1.~8.의 우측 ‘관련법령’란은 해당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령을 기술.
- ‘미성년자, 국적관련, 기타’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두고 있는 법령을 기술.

12. 기타 일반적 제한관련 등

< 관련법률 >

(1) 공직선거법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①항; (2) 국민투표법 제9조 (투표권이 없는 자); (3)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매수인의 결격사유’ (4) 평생교육법 제28조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②항; (5) 민법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 ①항 등

< 표 > 기타 일반적 제한관련 등의 결격사유 규정례

결 격 사유	관 련 법 령
1. 한정자산등	평생교육법, 민법제1072조
2. 파 산 자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민법제1072조

결격사유	관련법령
3. 금고이상	
4. 집행유예	국민투표법, 평생교육법, 민법제1072조
5. 선고유예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귀속재산처리법, 평생교육법, 민법제1072조
6. 자격상실	민법제1072조
7. 파면처분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귀속재산처리법, 평생교육법, 민법제1072조
8. 해임처분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국가기술자격법, 귀속재산처리법, 평생교육법, 민법 제1072조
· 미성년자	민법제1072조
· 국적관련	
· 기 타	평생교육법

※ 참 고 :

- 위 표의 결격사유 중 1.~8.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를 약칭한 것임.
- 1.~8.의 우측 ‘관련법령’란은 해당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령을 기술.
- ‘미성년자, 국적관련, 기타’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두고 있는 법령을 기술.

제 4 장 결격사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제 1 절 기본권 제한의 원칙

1. 직업의 자유와 제한 기준

(1) 의의 및 제한

직업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에 종사하는 등 직업에 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자유를 말하며, 영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포함한다.¹⁵⁾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직업선택(결정)의 자유와 직업행사(수행)의 자유로 나누어 직업행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입법목적 달성이 수 없을 경우에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즉,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비하여 직업행사의 자유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더욱 폭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¹⁶⁾

직업선택의 자유는 다시 주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각종 면허, 자격제도)과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으로 나뉘는데,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인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심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¹⁷⁾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은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명백하고 확실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고,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37조제2항이 요구하는 바 과잉금지의 원칙, 즉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그 심사척도가 된다.¹⁸⁾

15) 법제처, 헌법과 법제실무, 2008, p.173.

16) 헌재, 2002. 8.29. 2000헌마556.

17) 상계서, p.173.

18) 헌재 2002. 4.25. 2001헌마614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선택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 내지 행사의 자유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직업의 자유를 뜻한다. 그러나 이러한 직업선택의 자유도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¹⁹⁾

2. 주요 결정례 쟁점

결격사유와 기본권제한이 문제된 주요 결정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① 사립학교법 제57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0. 10.28. 선고 2009헌마442 전원재판부: 사립학교법 제57조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에 관한 부분
- ② 새마을금고법제21조제1항제10호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0.10.28. 선고 2008헌마612, 2009헌마88(병합) 전원판부
 - 새마을금고법 제22조제2항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선고받은 벌금액수와 상관없이 해당 임원이 당연퇴임되도록 규정한 새마을금고법(2007.5.25. 법률 제848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1조제2항, 제1항제10호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금융기관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염업조합 임원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당연퇴임기준으로 설정하였는 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새마을금고 임원에게 이들과 달리 벌금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당연퇴임되도록 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9) 헌재 2001. 9.27. 2000헌마152

- ③ 구경찰공무원법제7조제2항제6호부분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0.9.30. 선고 2009헌바122 전원재판부
 -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경찰공무원으로의 임용을 금지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6호(1982.12.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된 것) 중 “해임”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④ 결격사유 해당시 당연퇴직규정의 기본권침해여부: 헌법재판소 1988.4.30. 선고 96헌마7 전문재판부
 -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연히 공직에서 퇴직하도록 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공무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지 여부
- ⑤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당연무효인지 여부: 헌법재판소 1997. 11.27. 선고 95헌바63·85(병합) 전원재판부

제 2 절 결격사유 중 기본권침해 여부

1.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관련 결격사유

(1) 당연퇴직규정과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여부

- ① 사립학교법 제57조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부분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직에서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사립학교법(2008.3.14. 법률 제888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부분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소극적으로 판

시하고 있다. 즉, 그 헌법요지를 보면,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를 사립학교 교직에서 당연퇴직시킴으로써 교원의 사회적 책임 및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교원으로서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를 교직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범목적과 같범목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나아조치적와 같범목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덜 제약적인 대체적 입법수단의 존재조치명백하지 아니하고, 비록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교원지위조치박탈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적와 같범목공익에 비해 더 비중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내포된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원회적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 및 교직 수행에 대한 신뢰의 수준집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7조제2항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하고, 금고 이상의 형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²⁰⁾

이 사안에 관련하여, 청구인은 “사립학교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의 종류, 죄질 등을 불문하고 예외없이 당연퇴직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강조한 과도한 제재로서 직업의 자유 및 교수(教授)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립대학 교수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위를 강제로 박탈하고 있는 바, 이는 인사에 관한 대학의 자율적 판단을 전적으로 배제하여 헌법상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¹⁾ 즉, 청구인은 당연퇴직규정이 ‘직업의 자유’, ‘교수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사안이다.

20) 헌법재판소 2010.10.28. 선고 2009헌마442 전원재판부

21) 위 헌법재판소 판례.

- ②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선고받은 벌금액수에 상관없이 해당 임원이 당연퇴임되도록 규정한 새마을금고법(2007. 5.25. 법률 제848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1조 제2항, 제1항제10호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새마을금고 이무언에게 위선거과정에서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조항 위반죄에 관하여 단기의 공소시효를 인정해야 한다고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한 조항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및 일부 법률에서 선거범죄에 관하여 선거일 후 6월까지라는 단기의 공소시효를 특칙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새마을금고 임원에게도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단기의 공소시효제도를 마련해야 할 입법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전제적 사항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과잉금지원칙과 관련된 직업선택자유 침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1) 새마을금고는 금융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므로 그 경영을 책임지는 임원으로서 금융기관 임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성 내지 준법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임원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타락행위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가장 쉽게 해치는 기부행위를 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선출된 새마을금고 임원직에서 자동으로 퇴직시킴으로써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도모하고 있는 바,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은 적절하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새마을금고법상 기부행위금지조항 위반죄로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벌금형의 액수에 상관없이 벌금형을 선고받기

만 하면 임원직에서 당연퇴임되도록 하고 있으나, i) 선출직 금융기관 임원에 대해 어떤 종류의 형벌을 얼마만큼 선고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것인지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속하는 점, ii) 경미한 사안의 경우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도 있으므로, 벌금형 하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관의 양형재량의 여지가 비합리적으로 축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 iii) 벌금액수의 최저한을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최소한의 침해가 되는 것인지를 산술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임원직 자체를 박탈당하는 사익이 적지 않다고 할 것이지만,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임원으로서의 직무의 윤리성과 준법의식을 제고하려는 공익이 사익보다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이라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심사의 기준으로서 제시한 것은 다음과 같다. 즉, “직업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은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²²⁾

(2) 해임처분 결격사유와 공무담임권 침해여부

-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경찰공무원으로의 임용을 금지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제6호(1982. 12.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된 것) 중 “해임”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2) 헌법재판소 2008.2.28. 2006헌마1028, 판례집 20-1상, 311, 324~325면.

위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음의 이유로 소극적 결정을 내렸다.²³⁾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보호, 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주된 임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직업적 윤리성이 요청되는 바, 이러한 경찰공무원직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경찰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영구히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 헌법재판소는, “임용결격제도를 구체화함에 있어서는 해임사유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임용결격의 기간을 달리하는 방법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임의 원인행위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의 유형화가 반드시 합리적인 규정 방식인지 의문이며, 다양한 해임사유를 유형화하는 일이 쉽지도 않아 오히려 그러한 유형화로 말미암아 자의적 차별을 야기할 위험성 또한 있으므로 달리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리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여 입게 되는 당사자의 불이익에 비해 경찰공무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그 직무의 정상적 운영을 도모한다는 공익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봄으로써 결격 “경찰공무원의 직무의 성격과 중요성, 그에 따라 요청되는 고도의 윤리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해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가능성을 법률로써 영구히 배제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지나치게 과도한 조치로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23) 헌법재판소 2010.9.30. 선고 2009헌바122 전원재판부.

(3) 동일 유사한 법률관계와 개별 결격사유의 형평성 문제

- ① 새마을금고 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당연퇴임 되도록 한 것이 유사한 금융기관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의 임원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당연퇴임기준으로 한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지 여부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연업조합의 경우 모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임원의 당연퇴임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새마을금고 임원의 경우와 달리 취급하고 있는 점은 있다. 그러나 구체적 당연퇴임기준의 설정이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인 점, 이들 조합에 관한 법률들은 일정한 직업군에 속한 조합원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과 해당 직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또다른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새마을금고의 경우는 특정 직업군의 이익도모라는 목적은 전혀 없고 해당 지역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지위가 더욱 전면에 부각되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합헌으로 보았다.

반면에, 소수의견은 “유사금융기관 임원으로서의 지위에 요구되는 공공성, 고도의 청렴성, 선거과정에서의 공정성이라는 입법목적과의 관계에서 보면 새마을금고 임원과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연업조합의 임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전혀 없음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새마을금고 임원의 경우에만 하한없는 벌금형을 당연퇴임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기부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는 처벌조항의 법정형은 벌금형 상한이 200만원에 불과하나 위

비교대상 조합들에 관한 법률들에 있어서는 1,000만원 또는 2,000만원으로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는 바, 이는 기부행위로 말미암아 선거의 공정성 및 임원 지위의 공공성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새마을금고의 경우가 다른 조합들에서의 경우보다 비교적 작다고 입법자가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당연퇴임기준에 관하여는 오히려 다른 비교대상 조합들의 경우보다 엄격하게 적용시켜 벌금액수와 상관없이 벌금형을 받기만 하면 당연퇴임시키고 있으므로, 이는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²⁴⁾라고 주장하고 있다.

- ②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경찰공무원으로의 임용을 금지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제6호(1982.12.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된 것)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위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음의 이유로 소극적 결정을 내렸다.²⁵⁾ 경찰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 검사, 군인은 각기 해당 법령에 의해 부여된 고유의 업무를 행하며, 해당 법령들은 그러한 업무와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용결격사유와 임용결격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소수반대의견은, “징계에 의해 해임처분을 받은 자 중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려 하는 자’는 영구히 임용이 불가능하지만, ‘검사 또는 군인으로 임용되려 하는 자’는 3년 내지 5년의 임용결격기간이 지나면 임용이 가능한 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24) 헌법재판소 2010.10.28. 선고 2008헌마612, 2009헌마88(병합) 전원재판부.

25) 헌법재판소 2010.9.30. 선고 2009헌바122 전원재판부.

이 사건은 청구인이 1978.11.4.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수원경찰서에서 교통계 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1985.7.경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되었으나, 그후 1990.1.경 순경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990.3.31. 순경시보로 임용된 후 2007.7.2. 경위로 진급하여 경기경찰청 산하 수원중부경찰서에서 교통계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경기지방경찰청장이 2008.8.19. 청구인이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6호의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1990.3.31자 임용을 취소하는 내용의 통지를 한 것에 대한 소송과 관련된 헌법소원심판 청구이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8호는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검찰청법 제33조 제3호는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제7호는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결격기간을 정하고 있는 반면,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6호는 결격기간의 정함이 없이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한 것이다.

“일반직 공무원, 검사, 군인 등의 경우에는 그 해당 법률에 의하여 해임처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차 임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경찰공무원과 다른 공무원을 차별하여 평등원칙이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a)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차별 취급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공무원 임용결격제도의 구체적 내용 형성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평등심사는 완화된 심사기준인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차별취급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또한

b) 입법자는 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를 정함에 있어 해당 공직 업무의 내용과 성격, 조직의 특성 등을 두루 참작하여 임용결격사유를 정할 수 있는 입법형성의 재량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공직 업무의 내용과 성격, 조직의 특성 등에 따라 별도의 특별법이 마련되어 규율되고 있으므로 임용자격과 결격사유가 각각 규율된다고 보고 있다. 즉, 국가공무원이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되고, 경력직 공무원은 다시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는데, 경찰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에 속한다. 경찰공무원 외에도 검사, 군인 등이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이러한 특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각의 경우 그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 신분, 근무조건 등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별도의 특별법으로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가 규율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 검사, 군인에 대한 임용결격사유와 임용결격기간은 각각의 해당 법률에 의해 각기 다르게 규정되고 있다. 경찰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결격사유보다 더 강화되어 있는 바, 경찰공무원법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등을 임용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다(「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검사의 임용결격사유도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사유보다 강화되어 있는데, 「검찰청법」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사유 외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검찰청법」 제33조). 또한 군인의 경우 역시 「군인사법」에서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등을 임용결격자로 규정하여 국가공무원법의 임용결격사유보다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군인사법」 제10조제2항). 한편, 「국가

정보원직원법」은 국가정보원직원이 징계면직된 경우 이를 영구적 임용결격사유로 규정하여(「국가정보원직원법」 제8조제2항) 이 사건 법률조항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경찰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은 모두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경찰공무원과 검사, 군인은 모두 특정직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각기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고유의 업무가 있으며 그에 따른 업무수행의 성격이 상이하고 또 그 신분이나 임용자격도 다르다. 그렇다면 입법자는 위와 같은 업무와 조직의 특수성에 배추어 임용결격사유를 각각 달리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여타 법률보다 경찰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사유가 강화되어 있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경찰공무원을 차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생각건대, 평등의 원칙이나 공무담임권의 침해 이르지 않는 않지만, 입법정책이나 유사 입법례와의 비교 차원에서 보면, 적정한 입법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본다. 위헌이 아니라고 해서 입법평가 차원에서 본다면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제 5 장 결격사유 관련법제 개선방안

제 1 절 개선방향

1. 체계에 따른 개선방향

결격사유에 관한 현행 법령의 규정은 5가지의 연원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형법 제43조의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에 관한 규정에서 유래하는 자격의 상실과 정지를 각 개별 법률관계에서 구체화하여 결격사유로서 규정한 것. 둘째, 민법상의 행위무능력제도를 공법적 관계에 원용하여 적용한 것. 셋째, 상사법령에서의 파산제도를 공법적 관계에 수용하여 적용한 것. 넷째, 위임·고용관계의 해지처분의 부가적 효력에 해당하는 것. 다섯째, 해당 법률의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및 행정처분을 형법 제43조의 형의 선고의 특별한 경우로 적용한 것이다. 이를 연원적으로 구분한다면, 「형의 선고 관련 자격상실 및 자격정지」 및 「민법상 행위무능력제도에 기인한 결격사유」는 일반적 결격사유로, 그밖의 경우는 특별 결격사유로 볼 수 있다.

한편, 결격사유 대상 자격을 기준으로 본다면, 5가지 분야의 자격을 각각 유형화하여 그 구체적인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연원적으로 형법 제43조에서 자격상실 및 자격정지의 대상이 되는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데에 기초한다.

이와는 별도로 형법상의 자격상실 및 자격정지 대상 자격의 유형을 기준으로 하여 체계화 및 정비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형의 선고와 관련한 자격상실과 자격정지는 개별법령상의 결격사유와 대비하여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하나는 적용되는 자격의 범위이고 다른 하나는 결격사유로 되는 형의 선고의 종류이다.

형법은 4가지 분야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고, 3가지의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형의 선고로 상실되는 자격은 i) 공무원이 되는 자격, ii)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iii)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iv)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이다. 형법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사실’은 이 4가지 자격에 대하여는 이른바 영구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형의 선고로 자격이 정지되는 것은 위의 4가지 자격상실 대상 자격 중 i) ~ iii)의 자격이며,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은 대상이 아니다. 자격정지를 병과하는 경우도 그 대상 자격은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볼 때, 결격사유에 관한 법령의 정비방향은 형법 제43조제1항 각호의 자격별로 체계화하고, 그 중에 「공무원이 되는 자격」에 관한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를 기본적 규정으로 하여 각각 특별 공무원에 관한 결격사유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결격사유는 「공직선거법」 제18조 및 제19조를 기본적 규정으로 하여 선거 등으로 선임하는 광의의 공무원 내지 공공기관 임원에 관한 결격사유 관련 법령을 정비하면 될 것이다.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은 ‘자유업의 요건으로서 전문자격」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련된 업무에 관한 자격」, 「영업의 인허가」에 관한 결격사유 등으로 다양하므로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비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결격사유의 엄격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위탁·대행」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련된 업무에 관한 결격사유는 그 공익성과 공신력 등을 가장 강하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적자치나 사경제의 영역에 해당하는 영업 등과 관련된 결격사유보다 결격기간이나 형의 종류 범위를 특별요건으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법원의 선고에 의한 자격상실 및 자격정지 이외에 입법으로서 법률에 자격상실 및 자격정지를 별도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또 죄형법정주의 및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그리고 삼권분립에 따른 사법부의 권한을 입법권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하여 “공무의 성질과 기능으로 인하여 공무담임권에 대해서는 다양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피선거권의 제한은 공무의 기능과 성질 및 공무를 담당할 자를 정한다는 점에서 선거권보다 더 강한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견해²⁶⁾와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례²⁷⁾는 입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이 경우에는 형법 제43조의 입법취지 및 일반결격사유로서 자격상실 및 자격정지 형에 비하여 특별한 공익성 등의 사유와 필요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별 법령에서 일반직 공무원보다 특정직 공무원 등의 경우에 결격사유 요건을 더 강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직종과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가 있을 때 한하여 결격기간의 확대나 추가적인 결격사유를 입법하여야 할 것이다.

제4장까지는 여러 가지 쟁점을 기준으로 현행 결격사유 관련 입법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결격사유의 기본적 성격 재검토로서, 소극적 성립요건, 제척사유, 권리관계 소멸사유 등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26) 정중섭,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9, p.719.

27) 헌법재판소 1995.5.23. 95헌마5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이 공무원으로서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職)을 그만두도록 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의 직무전문성(職務專念性)을 보장함과 아울러 이른바 포말후보(泡沫候補)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며, 그것이 공무담임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둘째, 결격사유 관련 법률관계의 특성과 결격사유 효력 검토이다. 형벌의 효력으로서 결격사유(자격형) 적용, 행위무능력제도의 공법적 수용, 파산제도의 공법적 수용이 이와 관련된다.

셋째, 확장되거나 상용적으로 인용된 결격사유의 정비에 관한 것이다. 대표, 대리관계, 위임관계, 고용관계 기타 법률관계에서 주관적 요건과 결격사유 재분석을 하였다. 또한 자격형 효력의 적용범위 재정비: 형벌의 효력과 공법관계 형성, 소멸, 공직관계에서의 결격사유 확장, 축소 문제: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와 다른 업무수행관계에서의 결격사유 구분: 공무원임용관계 및 고용관계와 준정부기관, 공기업 등 공공기관 성격별 재검토, 규제(인허가 등) 분야에서의 결격사유의 확장 제한 문제 등을 검토하였다.

넷째, 위헌적 요소와 관련하여, 업선택의 자유 등의 제한여지가 있는 결격사유, 범위와 종류를 특정·제한하지 아니한 결격사유: 명확성 위반 문제, 결격사유의 효력: 당연 무효, 소멸효력 인정 여부, 동일 유사한 법률관계와 개별 결격사유의 형평성 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국가공무원법」이 가장 결격사유의 전형적 기본적 법률에 해당하므로 각 개별법령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원용하고 이에 어떤 특별한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있는지를 조사, 분석하여 그 연원과 체계를 따로 정리하였다.

공무원 임용관계 중 결격사유는 공무원 및 공무원 임용의 개념과 관련되며, 공무원의 개념을 아래와 같이 분류할 경우 그 각각의 체계와 특성에 따라 결격사유가 「국가공무원법」을 기본적 법률로 하여 정리할 수 있다고 본다. 협의의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어 그 공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피용자로서의 지위에 해당하는 자이다. 광의의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기타 입법부·사법부의 구성원으로서 공무를 담당하는 모든

자이며, 이는 i) 헌법 제7조제1항의 공무원, 공무원법상의 개념, ii)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별개의 법인격체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이에 일정한 권리·의무관계를 형성. 기관과는 다르다.

신분에 관한 결격사유는 임용의 개념 범위와 관계되며, 협의로는 신분의 신규취득에 해당하는 임용이지만, 광의로는 공무원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모든 행위(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항)이다. 이를 신분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의 관점에서 보면, i) 발생: 신규채용, ii) 변경: 승진임용, 승격,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 등, iii) 소멸: 면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임용을 협의의 개념으로 보면 공무원관계의 발생 및 변경행위로서 신규채용, 승진, 강임, 전임, 전보, 전직 등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하는 행위를 포함하지만, 최협의의 개념으로는 공무원관계를 처음으로 발생시키는 신규채용행위로서의 임명행위만을 뜻하게 된다. 그러나 결격사유가 공무원의 임용관계에 있어서는 취득요건이나 신분유지요건이기도 하므로 모든 단계의 임용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과 개념 범위에서 결격사유를 고찰하였다.

제 2 절 개별 결격사유별 개선방안

1. 공무원 결격사유 정비방향

신분에 관한 결격사유는 가장 기본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첫째 형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격이기 때문이며, 이를 바탕으로 일반직, 특정직 등 모든 종류의 공무원 관련 결격사유에서 원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조사, 분류한 국가공무원법 제43조의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 법령현황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형법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 등에 관한 개별법상의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비교하여 각각 특정직 공무원 등의 임용관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격사유를 규정하되, 협의의 공무원과 광의의 공무원을 구별하여 그 결격사유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형의 선고와 관련된 공무원과 결격기간은 이 공무원공무의 직접수행여부, 공무의 특수성, 관리감독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검사, 군인, 교사 등의 경우와 일반 공무원의 경우 등을 어떤 수준으로 결격기간을 정하느냐가 중요한 요소로 된다. 국익과 공익에 밀접하고 중요할 수록 결격기간과 형의 종류는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형법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결격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자격정지의 효력이 있는 형의 선고는 확장되어 적용된다고 하겠다.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결격사유 정비방향

이는 「공직선거법」 제18조 및 제19조가 기본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금치산자나 금고 이상의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전과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등에 의하여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선거권의 결격사유는 피선거권의 결격사유에 비하여 간단하고 제한적이라는 점이 차이가 있다. 즉,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 제2호는 집행의 종료를 결격기간으로 하고 있으나,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2호는 형의 실효기간을 결격기간으로 하고 있

다는 점이 다르며, 나머지 사유(제18조제1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는 동일하다.

「공직선거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는 선거에 의한 법인 임원의 선임 등의 결격사유에 그 법리가 확장 적용되고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위반으로 인하여 일정한 금액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결격사유로 하는 입법례에 해당된다. 각종 조합 법인의 임원은 선거로 선출되는 바, 이 경우의 결격사유는 이 유형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상의 결격사유보다 더 엄격하게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의 결격사유보다 완화된 결격사유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을 합헌으로 본다. 즉, “선거법으로서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자로부터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박탈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그 자에 대하여 반성을 촉구하는 데에 입법목적이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형벌을 받은 경우에 얼마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심판대상인 법률 조항이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²⁸⁾

3. 결격사유와 소멸·종료사유의 구별 정비

(1) 소극적 취득요건과 실효사유

결격사유는 신분, 자격 등을 취득하기 위한 적극적 요건이 아니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득할 수 없다는 의미의 소극적 요건이다. 따라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신분, 자격, 인허가

28) 헌법재판소 1995.12.28 선고 95헌마196.

등을 취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소급적 무효사유로 된다는 점에서, 임용·자격취득 등이 있는 이후에 결격사유가 발생할 때의 효력과 다르다. 이 경우에는 임용관계의 법정소멸사유 내지 법정해지사유로 된다. 사후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업 인허가관계에서는 실효사유, 당연취소 내지 임의취소사유 등의 효력이 있게 된다는 점에서 구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분, 자격의 취득당시에 결격사유가 존재하거나 인·허가당시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적 무효로 된다. 이는 결격사유의 본질적 성격에 기인한다. 반면에 후발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는 결격사유의 규정조항에서 정할 것이 아니라, 법률관계의 소멸사유나 해지사유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타당하다. 이를 당연 소멸사유로 법정하거나, 임의적 소멸사유 내지 해지사유로 하느냐 하는 것은 입법정책 내지 입법재량에 관한 사항이다. 생각건대, 형법 제43조의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 실효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신분에 관한 결격사유의 경우에는 당연퇴직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자격에 관한 결격사유의 경우에는 그 결격기간동안은 자격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자격유지조건으로 기능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격사유와 해지·해임·비소급적 취소(해제·철회) 사유는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행정행위의 확정력, 공신력,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후발적으로 발생한 결격사유는 이러한 해지·해임·비소급적 취소(해제·철회)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는 것이 법리에 맞다. 다만, 법정 당연 해지·소멸사유로서 하는 것이 효력발생요건 내지 취득요건으로서 자격요건에 대비되는 소극적 요건으로서의 결격사유 본래적 성격에 부합한다. 별도의 취소 등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에도 그 성격은 사실상 실효를 확인하여 공시하는 공적 절차로 기능을 부여

한 것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형성적 행정행위가 아니라 확인행정행위로 보는 것이다.

(2) 소멸·종료사유 중 결격사유

법령상에 규정된 신분, 자격의 후발적 종료, 소멸사유에 관한 규정, 인·허가의 취소·해지 요건(사유)에 관한 규정에 그 요건 사유의 하나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에서 후발적 결격사유 발생시의 효력을 규정하는 것은 그 법률적 성질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다. 법률관계 성립 당시의 결격사유는 당연무효사유로 소급효를 가짐에 비하여, 법률관계 성립 이후에 발생한 결격사유는 소멸·종료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장래에 있어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구별하여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타당하다.

4. 민법 개정 및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과 결격사유

(1)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제도 개정 관련

민법은 현행 행위무능력자제도를 제한능력자제도로 개정하고,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개정민법 제13조)으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고, 아울러 ‘피특정후견인’(개정민법 제14조의2) 제도를 도입하며, ‘행위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개정민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개정하였다. 이들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현행 결격사유 관련 법령은 이들 현행 행위무능력자에 대하여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개정민법은 2013년 7월1일 시행예정이므로, 개정민법상의 용어로 전부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2)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과 결격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관련 사기업체 등에 취업을 퇴직일로부터 2년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위반하여 취업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29조 제1호).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에 취업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30조 제3항).

공직자윤리법이 적용되는 것은 사기업체이므로 사기업의 경우에는 상법의 적용을 받고, 따라서 영리법인은 회사로서 특수법인 내지 공공기관과 무관하므로 법률로서 그 영리법인의 임직원 결격사유를 규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에서 사법적(私法的) 효력은 규정하지 아니하고 해당 퇴직공직자에 대한 처벌로서 규율하려는 것이므로 간접적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반면에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후보자로 하여금 선거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안에 일정한 직에서 사퇴하도록 입후보등록무효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간접적 결격사유로 볼 수도 있지만, 충실의무에 따른 겸직금지 내지 겸업금지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등(이하 “사기업체등”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3.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② 제1항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사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사기업체등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사기업체등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등이 사건을 수임(「변호사법」 제3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임을 포함한다)하거나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세무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등이나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의 업무와 제1항에 따른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퇴직공직자의 자유 및 권리 등 사익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한 공익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4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업 승인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경우에 해당 업무 처리 등의 건수, 업무의 빈도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해당 취업심사대상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는 법무법인등에,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다. 다만,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차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의 직위에서 퇴직한 사람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⑦ 제1항의 경우 사기업체등의 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9]

5. 개별 결격사유별 법제 정비방안

(1) 제한능력자

개정 민법이 시행되는 2013.7.1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중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령은 전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는 본인 결격사유로 할 뿐만 아니라 추후에 후견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해임·자격정지, 인허가해지사유로 하며, 별도의 처분 절차보다는 확인 및 통지로 하는 당연 소멸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로 하는 것이 공익성과 공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 물론 후견심판은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심판으로 정한다는 점에서 정신적 제약이 발생한 경우와 피한정후견인 내지 피성년후견인으로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검찰청법 제39조의2 규정처럼 퇴직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전문자격제도와 관련된 결격사유로서는 자격상실로 할 것이 아니라 자격정지사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한능력은 종료심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 영구(절대적)결격사유

결격기간이 없는 형의 선고를 결격사유로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는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특별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결격기간이 없는 결격사유이다. 검사의 경우도 「검찰청법」 제33조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고 영구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영구결격사유는 아주 특별한 공익적 필요가 없으면 결격기간을 두는 것이 과잉규제금지의 원칙에 부합할 것이다.

(3) 실행의 선고와 결격기간

「국가공무원법」을 비롯한 대부분의 결격사유 중 ‘형의 선고’와 관련하여 결격기간을 두고 있다. 이는 입법으로 자격정지를 법정할 것인가 아니면 법원의 판결로 자격형으로서 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국가공무원법」은 ‘법원의 판결’과 ‘입법’을 동일한 자격상실 내지 자격정지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33조제6호 참조).

법원의 판결은 형법 제44조의 자격정지형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할 수 있고,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병과할 수 있다. 문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처럼 결격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병과와 모순될 수가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실행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의 결격기간을 두고 있다. 이는 자격정지형 5년 병과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만일에 병과하는 자격정지형이 그 기간을 5년보다 단기간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고 5년보다 장기간인 경우에는 자격정지형이 적용된다. 물론 이 문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라는 결격사유와 제3호 규정의 결격기간 5년 중 어느 하나로 해결은 되겠지만, 입법기술상 중복성을 면하기는 어렵다. 또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라는 결격사유도 입법기술상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법률에서 「공무원이 되는 자격을 상실하게 하거나 정지」시키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입법기술상 필요하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직접 해당되는 법률요건을 직접 「국가공무원법」에 규정하는 것이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는 입법취지와 입법정책에

부합한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는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 하겠다.

헌법재판소는 결격기간에 관하여는 폭넓은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모델입법으로서 정비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향후 입법기준으로 활용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에 따라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수많은 법률관계의 특성을 다 반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리가 따른다고 하겠다.

(4) 징계로 파면처분 및 해임처분

현행 국가공무원법 기타 신분 관련 결격사유 관련 법령에서는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징계로 해임처분’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가 적지 아니하다.

모든 신분 관련 법령 및 자격관련 법령은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그 징계의 근거법령이 지나치게 불분명하고 불확정적이라는 점이 문제이다. 이는 당해 관련 법령에 의한 징계로서 파면 내지 해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새마을금고법」은 ‘법령에 의하거나 또는 타기관, 단체 등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직처분을 받은 때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가장 포괄적인 규정에 해당한다. 반면에 ‘이 법 또는 외국증권법령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증권거래법 제80조)처럼 명확하고 한정적으로 해임 내지 면직의 근거법령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다. 「법무사법」처럼 ‘공무원으로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에 의하여 제명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특정하는 입법례도 있다.

법령의 명확성, 특히 결격사유는 강력한 규제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파면 또는 해임의 근

거법령을 명확히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명시하거나 관련 법률관계를 명시하고 아울러 당해 법률에 의한 파면, 해임, 제명을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국적 관련 결격사유

일정한 법률의 경우에는 결격사유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100만명이 넘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다문화가족으로서 정주하고 있다. 따라서 결격사유로서 국적조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국적조항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포함한 공무담임권은 국민주권원리의 성질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인 국민에게만 인정된다. 외국인에게는 헌법 제25가 정하는 공무담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법률이 어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이더라도 그 직에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이 국민주권원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면 법률로서 이를 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게 되면 국적조항을 결격사유로 할 것이 아니라 자격요건상에 예외조항으로 허용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칙적으로 국민주권원리상 외국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다면, 예외적인 허용의 경우를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입법정책상 타당하다고 본다. 만일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10조처럼 편찬사업회의 임원 결격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를 규정하는 것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한 경우라고 하겠다. 국적법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하게 되는 경우를 상정하면 더욱 명시적으로 결격사유에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6) 파산 관련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를 포함시킬 것인가가 문제된다. 상공회의소법 제23조는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종전 파산법은 회생절차에 관한 사항이 없었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를 파산절차와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에 준하는 회생절차의 개시 결정도 결격사유의 하나로 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책임능력 내지 변제능력이 중요시 되는 법률관계의 경우에는 임원 등의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6. 규정형식의 표준화 및 결격사유 간 형평 제고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각 개별 법령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입법기술상 개선·정비될 필요가 있다. 하나는 결격사유의 규정형식의 표준화·정비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결격사유의 배제 및 동일 법률관계 간에서의 결격사유 형평의 문제이다.

결격사유의 규정형식의 표준화문제는 다시 本文의 규정형식과 各號의 규정형식의 정비문제로 나눌 수가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이 본문의 경우 못지않게 각호의 규정형식이 무척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음은 이미 규정례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공통적인 결격사유에 관한 일정한 기준 규정형식에 따라 정비되어야 법령문의 명확성과 간결성을 제고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본다.

개별 결격사유의 조정문제는 규제완화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의 지양이라는 측면에서 요청되는 사항이다. 이는 세부적인 법률관계의 유형에 따른 분석을 기초로 하여, 가능한 한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의 결격사유는 차등을 둘 필요가 없거나 적다는 점에서 흠결되거나 과도한 개별 결격사유들을 정리하는 문제이다. 이는 결격사유를 두고 있는 법률관계를 어떻게 유형화, 세분화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일응 유형화가 가능하고 유형화된 각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결격사유를 설정한 이유가 동일하고 그 정도에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결격사유들을 두는 것이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임용제도와 관련한 결격사유의 경우에는 다시 그 공익성의 정도에 따라, 공무원에 관한 경우와 일반 종사자의 경우로 대별할 수가 있고, 임용관계와 위촉관계 및 위임관계에 따라 직무의 정도와 공익성이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구분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격제도와 관련하여는, 자유업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자격과 취업요건으로서의 자격으로 구분하고, 결격사유의 발생의 효과와도 연관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응시자격의 제한, 자격의 당연취소사유·임의취소사유, 업무정지사유, 자유업등의 개업제한사유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문제할 것이다. 들은 자격제도의 취지와 결격사유제도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영업제도의 인허가등과 관련된 결격사유의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제한·금지의 정도에 따라 결격사유의 종류와 정도가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규정용례상 허가와 인가와등록 등이 그 용어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서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바,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결격사유에 의한 제한정도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법령입안심사기준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바처럼, 신고영업의 경우는 허가 및 등록영업과 차별화되어 가볍게 규정되어야 하는 것처럼 인허가등의 영업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자료 1> 체계별 결격사유 규정례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 4 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2. 이 법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제1호의 직에 있었던 자
3.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축전염예방법」

제43조(검역물의 관리인 지정 등) ①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운송·입출고조작(入出庫操作) 또는 사육 및 보관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사육관리인, 보관관리인, 운송차량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의 지정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감사원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 7 조(개방형직위 임용절차) ① 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직위의 임용예정직위별로 2인 또는 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원장에게 추천하고, 원장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은 임용하고자하는 자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나 이에 상당하는 결격사유로 인하여 임용할 수 없고, 다른 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 4 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2. 이 법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제1호의 직에 있었던 자
3.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검찰청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편찬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관에서 임원이 될 수 없게 한 자

○ 「경찰법」

제 6 조(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당적(黨籍)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職)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 ① <생략>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공립 및 사립학교 강사의 임용·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1. 국립·공립 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
가. <생 략>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12.31, 2009.3.25>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 7 조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 7 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이 법이나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이나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 4 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중방역수의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1.25>

○ 「과학기술기본법」

제 9 조의6(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단서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12.27]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 ① <생략>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공립 및 사립학교 강사의 임용·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1. 국립·공립 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
가. <생 략>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
2. 사립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
가. <생 략>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

○ 「공무원연금법」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 7 조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 7 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이 법이나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이나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 4 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중방역수의사로 임용될 수 없다.

○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 5 조 (명부에서의 삭제) 명부의 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1. 교사로 임용된 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 의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때
4. 삭 제 <2004.9.3.>

○ 「과학기술기본법」

제 9 조의6(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단서를 준용한다.

○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 7 조(임용자격기준) 정책연구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별표 1에 정한 자격기준의 1에 해당하고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약에 관한 규정」

제 9 조(위원의 자격) ① 각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6.6.12>

1. ~ 5. <생 략>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2.1.26]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심사위원회

제74조의12(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74조의13(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의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74조의11에 따른 행위규범을 위반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②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 또는 해촉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9 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생략>

○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생략>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대
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생략>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 9 조(임원) ① ~ ③ <생략>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될 수 없다.

⑤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 8 조(임원) ① ~ ③ <생 략>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원장이 될 수 없다.

⑤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⑥ <생 략>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9 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립 중앙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회법」

제43조(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3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②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심사보조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④ <생 략>

○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기술지주회사의 설립) ① 공공연구기관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공연구기관과 함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보유인력과 보유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4. 보유기술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에 해당할 것

○ 「노동위원회법」

제12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위원회 위원에 위촉될 수 없다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2(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중보건의사로 임용될 수 없다.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③ <생 략>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 8 조(직원의 임용 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호처 직원은 신체 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하며 품행이 바른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③ 제2항 각 호(「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 등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10.22]

○ 「대한민국학술원법」

제 4 조의2(회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없다.
② 회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출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③ <생략>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념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관으로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한 사람

○ 「독립기념관법」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독립기념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6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8 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무역보험법」

제4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4.5>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문화예술진흥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2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5.25>

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 4 조(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당적을 가진 사람은 명예시장·군수에 위촉될 수 없다.
② 명예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임원) ① ~ ③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정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되면 임원의 직을 상실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2조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에 따른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생략>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념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정관에서 임원이 될 수 없게 한 사람

○ 「방송문화진흥회법」

제 8 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참 고 자 료

○ 「방송법」 *한국방송공사

제48조(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한국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2.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자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 「법률구조법」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법원조직법」

제72조(사법연수생) ① ~ ② <생략>

- ③ 사법연수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수습의 태도가 심히 불성실하여 수습성적이 불량한 경우
4. 질병으로 인하여 수습이 불가능한 경우

○ 「별정우체국법」

제 3 조의2(피지정인의 자격요건) 피지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일 것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
3. 별정우체국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이 있는 사람일 것
4.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있는 사람일 것
5.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있는 사람 2명 이상을 신원보증인으로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일 것[전문개정 2011.5.24]

○ 「병역법」

제34조의2(징병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및 보수 등) ① 징병검사전담의사는 병무청 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군인보수의 범위에서 보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며,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⑤ <생 략>

⑥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징병검사전담의사로 임용될 수 없고, 징병검사전담의사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그 신분을 상실한다.

⑦ <생 략>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7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부패방지 및 국가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국가편찬위원회

제 9 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3조(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② 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지면 그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 「사립학교법」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81.11.23, 1990.4.7, 2005.12.29, 2008.3.14>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2.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73.3.10]

○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31조(연수생의 임명등) 대법원장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연수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에 수습등록을 한 사람 중에서 연수생을 임명한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0조(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5.23>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사행산업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① <생 략>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1.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산학협력단(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공단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1조의4(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에 규정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때
2.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서울대학병원 설치법」

제 7 조(임원) ① 대학병원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② ~ ⑤ <생 략>
⑥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될 수 없다.
⑦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

○ 「서울치과대학병원 설치법」

제 7 조(임원) ① ~ ④ <생 략>
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치과병원장이 될 수 없다.
⑥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치과병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

○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제 5 조 (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 임명될 수 없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명예직연구공무원의 위촉 해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명예직 연구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위촉기간 중 담당 시험연구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직무상 또는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3조(보관관리인의 지정 등) ①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관관리인 또는 운송차량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이 법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임원) ① ~ ⑥ <생략>

⑦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위원회

제 8 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① 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과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4.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③ 중재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직(職)에서 해촉(解囑)된다.

○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2.17>

1. 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및 법관을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화업자
5. 제57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비디오물영업자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참 고 자 료

○ 「예금자보호법」 *예금보호공사

제16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0.12.30>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제 6 조(응시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 「외무공무원법」

제 9 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외무공무원은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우편법시행규칙」

제 4 조(우편업무의 일부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 ① 영 제4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방문접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8.4>
1. 개인 : 18세 이상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법인 :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 등 우정사업 본부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 <생 략>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4.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5.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 「원자력진흥법」

제 6 조(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제13조(위원의 결격 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이 임기 중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제10조제3항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중재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10.9>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국학교법인

제14조 (임원 및 임원선임의 제한 등)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의 승인을 취소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제10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6.10>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 9 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자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청원경찰법」

제 5 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 ③ ~ ④ <생략>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 5 조(산림보호직원의 임용 등) ① 배치권자는 청원자가 배치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한다.

-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③ <생략>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의3(진흥원의 임원) ① ~ ⑤ <생 략>

⑥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치료감호법」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제3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39조에 따라 위원에서 해촉(解囑)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5.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6.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직무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위원이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국기원) ① ~ ⑤ <생 략>

⑥ 국기원은 임원으로서 이사장·원장·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3.17>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공제회 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제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③ <생략>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 8 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

○ 「한국마사회법」

제2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사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마사회에 등록된 마주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6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 9 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 8 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한국연구재단법」

제 7 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②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한국은행법」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 ② 재단의 임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한국투자공사법」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한국환경공단법」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7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할 당시에 그에게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항만공사법」 *항만위원회

제1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0.2.4]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안전심판원

제10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판원장이나 심판관이 될 수 없다.

○ 「행정심판법」

제 9 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 ① ~ ③ <생 략>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이에 해

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⑤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중 그의 의사와 다르게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2(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 및 결격사유) ① <생 략>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될 수 없다.

○ 「헌법재판소법」

제19조(헌법연구관) ① ~ ⑤ <생 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1.4.5>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생 략>

⑧ 헌법연구관이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자료 2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원용 법률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임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 등) ⑤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⑥ 농정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2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5.25>

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감독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 ② 공사(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발전법

제32조(한국생산성본부) ⑧ 한국생산성본부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전문개정 2010.1.27]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7(「민법」등의 준용) 한국석유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선박안전법」

제59조(「민법」의 준용) 공단(선박안전기술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2.6>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수자원관리법」

제55조의8(「민법」의 준용) 공단(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7.25]

참 고 자 료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2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암관리법」

제45조(「민법」 등의 준용) 국립암센터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4조(「민법」의 준용) 공단(에너지관리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30>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과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자연공원법」

제69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단(국립공원관리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10.9>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전기사업법」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3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의 “사원”, “사원총회”와 “이사 또는 감사”는 각각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 “회원총회”와 “임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5.21]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31조(「민법」의 준용) 산업진흥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발센터(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09.3.25>

○ 「주택법」

제8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 등에 관하여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적용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3]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4조(「상법」의 준용) 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8]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8조(「민법」의 준용) 청소년상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6 조의7(「민법」의 준용) 활동진흥원(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5.17]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 ① ~ ③<생 략>

④ 진흥원(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26]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3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사(대한지적공사)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한국가스공사법」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 ② <생략>

③ 공사에 관하여 이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30]

* 결격사유 규정 없음

○ 「한국공항공사법」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과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3.25]

* 결격사유 규정 없음

○ 「한국관광공사법」

제1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과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5]

참 고 자 료

○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26]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23조 (「민법」의 준용) 교육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5]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0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공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한국도로공사법」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한국마사회법」

제2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사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마사회에 등록된 마주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5.27]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6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 9 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참 고 자 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8.12.31]

○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8.12.31]

○ 「한국석유공사법」

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8.3]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22조(「민법」의 준용) 안전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8]

○ 「한국전력공사법」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생 략>
②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 결격사유 규정 없음

○ 「한국조폐공사법」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29]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0.1.25]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37조 (다른 법률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16조 (「민법」의 준용) 연수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한국환경공단법」*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7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할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32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항만공사법」

제 2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만공사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2조제1항, 제25조제5항, 제31조제6항, 제34조제1항제2호, 제35조, 제36조제2항, 제38조, 제39조 및 제48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6.1>

제1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자료 3 > 특정직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원용하지 않은 경우

○ 「경찰공무원법」

제 7 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될 수 없다.

1.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지면 그 직에서 교체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정보원법」

제 8 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직원은 사상(思想)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신체가 건강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사람

< 자료 4 > 공법상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결격사유 관련 법령

○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4.3.12, 2005.8.4>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선거법,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② 제1항제3호에서 “선거법”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8.4>

③ <생략>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제52조(등록무효) ① 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 9. <생 략>
10.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11. <생 략>

②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다만, 제47조제5항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의 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수를 합한 수가 그 지역구시·도의원 정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합한 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에 미달하는 경우와 그 여성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3.12>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자료 5> 파산자 관련 결격사유 법령

○ 「상공회의소법」

제23조(의원 등의 자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원과 특별의원이 될 수 없다.

1. 회원이나 특별회원이 아닌 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의원, 특별의원 및 임원의 직(職)에서 해임
된 자로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의원과 특별의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의원 및 특
별의원은 면직된다.

[전문개정 2011.5.24]

<자료 6> 영구결격사유 입법례

○ 「검찰청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국가정보원법」

제 8 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직원은 사상(思想)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신체가 건강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사람

<자료 7> 대한민국 국적을 결격사유로 하는 입법례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8 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무역보험법」

제4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4.5>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념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정관에서 임원이 될 수 없게 한 사람

○ 「방송문화진흥회법」

제 8 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방송법」 *한국방송공사

제48조(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법률구조법」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별정우체국법」

제 3 조의2(피지정인의 자격요건) 피지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일 것**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
3. ~ 5. <생 략>

○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법률」

제 9 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5. 본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
- ②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전쟁기념사업회법」

제 9 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념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관으로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한 사람

○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 4 조(「경찰공무원법」 등의 준용 및 특례) ①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와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중 제46조, 제68조,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및 제77조를 제외하고는 「경찰공무원법」과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을 전투경찰순경에게 준용한다.

② ~ ③ <생략>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 9 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자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 8 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

○ 「한국은행법」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 국가공무원법은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 3 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

○ 「부패방지 및 국가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국가편찬위원회

제 9 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외무공무원법」

제 9 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외무공무원은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참 고 자 료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중재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법률」

제 9 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5. 본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전쟁기념사업회법」

제 9 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념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관으로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한 사람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5.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6.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직무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위원이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 「한국마사회법」

제2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사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마사회에 등록된 마주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행정심판법」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⑤ <생 략>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헌법재판소 계약직공무원 규칙」

제 4 조(외국인계약직공무원의 채용) ① 삭 제 <2006.9.14>

② 사무처장은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 중 국가공무원법을 원용하지 않는 경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

제5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결격사유규정없이 해임사유 등으로 규정한 경우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 8 조(위원의 해임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직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현저히 저해한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
5.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연구회 임원의 해임) 국무총리는 연구회의 이사장, 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또는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상·정신상의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법령 또는 연구회의 정관을 위반하여 연구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4. 제29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회 임원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 8 조의2(채용계약의 해지) ① ~ ② <생 략>

③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채용계약을 지체 없이 해지하여야 한다.

1.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채용계약상의 대상 직무가 소멸되었을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다만,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죄를 범하여 기소된 경우와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참고 문헌

- 김성호, 법령상의 결격사유에 관한 연구, 법제(순간) 437호, 법제처, 1994.05.
- 高松基助, 취제역의결격사유, 개정회사법의연구: 連井良憲선생환력기념, 법률문화사, 1985.
- 국회사무처, 법제이론과 실무, 2006.
- 김현수 외,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자격체제 구축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3.
- 노태악, 집행유예의 결격사유가 되는 전과의 발견과 집행유예 선고의 취소, 강의중교수정년기념논문집, 교학연구사, 2002.2.
- 도재형, 시보기간 중 결격사유가 소멸한 공무원에 대한 임용취소처분의 효력,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34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0.
- 박종연,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결격규정’ 폐지해야, 법률신문 3432호 (2006.02), 법률신문사, 2006.
- 반도오, 법인의신용금고의회원としての흠격사유, 은행법무21 53권 5호 (701호), 경제법령연구회, 2009.
- 房基浩, 인허가법령에 있어서의 결격사유, 법제(순간) 260호, 법제처, 1989.03.
- 백문흠, 결격사유의 입법유형 분석과 정비방향에 관한 고찰, 법제 598호, 법제처, 2007.10.
-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2007.
- 西原 諄, 상속결격사유, 判例イムズ 임시증간(688호): 유산분할·유언 215題 - 가정재판소제도40주년기념, 판례타임즈사, 1989. 04.

참 고 문 헌

- 송희호, 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의 권리구제, 재판실무연구 1999, 광주지방법원, 2000.
- 手塚和彰, 「정년퇴직후도 특단의결격사유のないかぎり 재고용するとの노동 관행を 인정し, 友결격사유のない者に対する 재고용後の 부당노동 행위とした 사례」, JURIST 657, 有斐閣, 1978. 02, 128면.
- 양창수, 상속결격제도 일반: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경우, 민법연구 제5권, 박영사, 2006.
- 오종근, 상속결격사유: 낙태의 경우, 가족법연구 7호, 한국가족법학회, 1993. 12.
- 윤형한, 임용결격과 퇴직급여, 행정판례연구 5집, 박영사, 2000.
- 이강원, 공무원임용결격사유와 당연퇴직, 행정소송실무연구: 1999~2002. II, 서울고등법원, 2002. 12.
- 이동임 외, 자격제도의 개선방향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3.
- 이상희, 결격사유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법제 525호, 법제처, 2001.09.
- 李性龍, 판례평석, 대법원판례해설 17호, 법원행정처, 1991. 11.
- 이승호, 집행유예의선고를 받은 후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경우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에 해당 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48호(2003 하반기), 법원도서관, 2004.
- 이준우, 법령상 결격사유 의 정비방향, 신세기의 민사법과제, 법원사, 2001.
- 전원목부, DIP형 회사건쟁생사건의 관재인의 흠격사유, 기업분쟁 & 민사수속 법리론: 복영유리선생고희기념, 상사법무, 2006.

- 정인섭, 노동조합 결격요건의 심사, 노동법연구21호, 서울대학교 노동법 연구회, 2006.
- 정태용, 결격사유발생의 효과, 법제(순간) 492호, 법제처, 1998.12.
- 趙炳顯, 집행유예의 결격사유와 취소사유, 재판자료 49집: 형사법에 관한 제문제, 법원행정처, 1992.
- 조용호,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과 퇴직급여, 법조 49권 7호, 법조 협회, 2000.
- 조정윤 외, 국가기술자격종목 정비 및 제도 개선(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 조정윤 외,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사업(I)~(VI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3.
- 황경웅, 상속결격에 관한 제반문제, 가족법연구 20권 2호, 한국가족법 학회, 2006.09.